

대한민국 모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 콘텐츠 공모전

공모기간
9.3.~ 10.9.목 (18:00)



공모주제 교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응원

공모분야 숏폼 웹툰

- 숏폼 내용 : 1분 이내의 창작영상물[HD급 1280*720픽셀 이상(세로형 9:16)]
- 웹툰 내용 : 10컷 이내의 창작웹툰[컷 크기 : 1,080*1,080px]

응모방법 공모전 전용 접수페이지 등록 | www.correctionscontest.com

시상내역	구분	분야별 인원	분야별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팀)	법무부장관상(상금 150만원)
	우수상	1명(팀)	법무부장관상(상금 100만원)
	장려상	2명(팀)	법무부장관상(상금 각 50만원)
	참가상	3명(팀)	상금 각 30만원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ljh@thinkcontest.com / 02-6278-3139



교정

vol.592.
2025. September

09

Extend



12



16



22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편지__ 종이 위에 머문 시간, 시간의 흔적들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창원교도소를 참관하고 나서
이현준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3학년

12 우리는 한마음

자연에 옮겨 심은 삶
교정의 마음은 그대로
인터뷰 | 송근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전지회 회원

교정 이야기

16 교정 기관

오각형 건물 속의 숨은 기능,
효율적 동선으로 관리 최적화
충주구치소

22 교정과 사람들

전문성과 협업으로 떠 가는
직원·수용자의 '마음 회복'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

교정 아카이브

26 교정 포커스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상)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38 교정 논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하)
김도균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56 교정 리포트

‘엄벌주의’는 없다?:
엄벌성과 형벌 포퓰리즘의 이론적 맥락
이현영 경기대학교 교정심리학전공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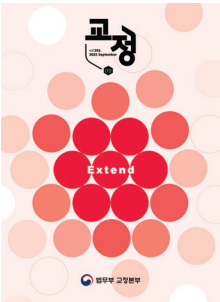
교정 뉴스

86 교정본부 NEWS

88 교정기관 NEWS

95 모범 공무원

96 독자마당



COVER STORY

삶은 종종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마음 씀씀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틀을 부드럽게 펼쳐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교정의 나날이 눈에 띄는 사건으로 가득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수용자와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동료와의 협력 속에서, 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결 속에서, 오늘도 교정이라는 울타리를 조용히 넓혀갑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흥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발행일 2025년 9월 8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지 종이 위에 머문 시간, 시간의 흔적들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는데, 책장 한쪽 구석에 숨은 듯 놓여 있는 색바랜 누런 종이 박스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들어내어 위 뚜껑을 조심스레 밀자니, 오래되어 빛바랜 편지 묶음이 눈에 가득 들어와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코끝으로 훅 들어오는 해묵은 종이 냄새는 진했지만, 그러나 익은 시간의 그 냄새는 정녕 구수하고 정겨울 따름이었습니다. 냄새에는 기억이 배어 있다고, 그 냄새는 한 시절의 숨결처럼 혹은 잊힌 세월의 속삭임처럼 조용히 마음을 노크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내가 정리해 두었음이 틀림없을 그 박스에는 낡고 푸른 천으로 야물게 묶여진 편지 묶음들뿐 아니라 학창 시절의 통신표(성적표)며 상장 등 속은 물론, 신혼여행을 비롯해 가족 여행 때마다 구입한 기념 엽서들까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 온통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리움의 더미들로만 다독다독 쟁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중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편지이다.'*

오래전 주고받은 편지들, 머금은 세월을 반추케 하는 종지와 글들을 펼쳐 놓고 지난 삶의 퍼즐 조각을 매만지고 보듬는 일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기꺼웁기 그지

없는 작업이라 할만합니다. 편지는 시간을 다투는다고, 살아오며 마주했던 역경의 흔적과 무수한 의문과 다짐의 독백들까지도 모두 시간이라는 잉크에 희석되고, 이윽고 별뉘같은 추억의 질료로 절취되어 마음의 온기를 돋구어 줍니다. 그리하여 '삶이란 스스로의 속도로 자신만의 풍경을 얻어 가는 과정'임을 묵은 편지로 하여 새삼 깨우치기도 합니다.

박스 속의 편지 묶음을 뒤적이자니 자그마한 상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 백일장에서 받은 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장에 표기된 작품의 제목 또한 '편지'인지라 절로 웃음이 나고,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마치 어제의 일인 양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눈에 그려져 왔습니다. 학급의 명예를 드높이는 담임 선생님의 엄명으로 어쩔 수 없이 참가한 교내 백일장이었습니다. 주어진 과제가 '편지'인지라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머뭇거렸지만 당시 한창 불붙고 있었던 월남전이 얼른 뇌리에 떠올라 바쁘게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친형제 못지않게 우애가 깊었던 의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동생은 고교에 재학 중이었던지라 그야말로 애뜻하고 절박한 형제간의 사랑과 정을 편지에 담아 나누었으며 그 편지로 하여 두 형제는 하루하루 삶의 활력과 의미를 찾았었는데, 어느 날 형으로부터 보내



온 편지가 다름 아닌 형의 전사 통지서였던지라 그 편지를 들고 울며 쫓아 나간다는, 편지가 답을 수 있는 삶의 애환과 희비의 극단을 표출해 보고자 적어나간 글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참 민망할 뿐인 중학생의 글이지만, 그러나 또한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면 어쨌든 글귀를 찾아가려 했던 기특함을 엿볼 수 있어 즐거웁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편지를 이름하여 아스라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또한 하나 둘이 아납니다. 고교 시절 유행했던, 이른바 펜팔(pen pal)에 대한 추억이 그러합니다. 당시의 학생잡지 뒷면 펜팔 페이지에는 편지 왕래를 원하는 남녀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가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답장을 받을 확률은 지극히 낮았던 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언감생심 도전조차 해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옆자리 짝꿍이 애절(?)하게 펜팔 편지를 부탁하여 오는 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처음 해 보지만 부탁받은 이상은 회신의 유무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 노심초사 이마를 괴고 한 자 한 자 마음을 다해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완곡하면서도 간절한 문구로 시작하여, 편지지 위에 펜을 들게 한 솔직한 속내를 서슴없이 적어 두는 것으로 편지글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편지를 받은 여학생의 답신이 도착하는 사건(?)이 빚어졌고, 흥분한 친구가 비명하듯 그 사실을 학급 내에 퍼뜨리니, 이에 반 학생들이 뒤질세라 여럿이 나서서 편지의 대필을 부탁해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명 두 명, 회신 확률 100%의 성과를 나타내기에 이르자 대필 청탁은 더욱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렇긴 말건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한번 써먹은 편지 내용에 약간의 단어만 달리하여 프린트 인쇄물 배포하듯이 건네주면 그만이었고, 덕분에 수시로 빵 가게로 초대되어 빵을 포식하는 호강을 누리기도 했었지요. 싱겁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움이라고, 그 청춘의 한 페이지가 흑백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의 잠금을 풀고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리움이 찌릿찌릿 역류해 오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선가 읽은 듯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으며 산다고, 따라서 젊어서 자신의 삶을 용기 있고 치열하게 사는 것은 늙어서 먹고살 양식을 저장하는 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 발휘된 스스로의 용기와 부지런함만으로도 이미 만만찮은 노후의 양식은 축적해 왔었다고 감히 자부해볼 듯싶습니다. 젊은 날 연애 시절에는 '상대가 나를 이끄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어' 마음의 모든 것을 꺼내어주는 고백을 서슴지 않았 습니다. 말로 하기엔 쑥스러운 마음을 편지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후, 감추고 싶은 사소한 욕망에 대해서도 편지의 힘을 빌리니 쉽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중국에는 내 마음을 꺼낼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따뜻한 교류의 장을 편지라는 소통의 도구로 하여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들의 사춘기 민감한 성장 시기에도 늘상 혼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직업적 리스크에 따른 우려를 떨쳐버리고자 또 참 많은 염서와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냈었습니다. 행여 아이들이 빗나가기라도 할까 봐 감정의 공유와 생각의 일치를 견인해 나가는 땀흘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행여 마음의 벽이라도 쌓여지고 있을까봐 그 마음의 돌들을 하나씩 부지런히 치워내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나의 편지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로, 또한 마음의 거울을 닦아 주는 격려로 역할 할 수 있기를 고대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어떤 것도 쉽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이 절박하고 소중하게 마음을 휘감아 와 나로하여금 끊임없이 펜을 들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탈하게 자라 이미 불혹을 훌쩍 넘었고, 제 삶의 자리를 굳건히 뿌리 내려 건사해 갈 줄 아는 두 자식을 보노라면 그때의 절박함들을 결코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교도관이었음을 표징하듯, 편지 중에는 출소자들이 보내온 것들도 여러 통 있었습니다. 비록 갇히고 지키는 날 선 경계를 두고 살았지만 오랜 시간 몸을 부대끼면 정들고 마는지라, 출소할 때면 힘 주어 악수를 나누곤 했었지요. 살다가 정 힘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한번 하라며 등 두드려 배웅해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재소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군기반장을 자임하며 나섰던 터라 출소자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나름 긴장하며 봉투를 뜯어야 했었지요.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하나같이 잘살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수용생활 중의 가르침에 감사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아 감개무량할 따름이었습니다. 재소 중에는 잔소리와 호통이 섭섭하기만 했는데, 출소하여 돌아 보니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원칙적인 수용처우야말로 행형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정녕 깨우칠 수 있었다고들 했습니다. 출소와 동시에 이미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의 눈으로 교정을 정의할 줄 알고 있었으니, 고맙고 놀라움기 그지없어 한참을 허허거리며 혼자 웃었더랍니다.

시간과 기억에 대한 독특한 사유가 곳곳에 묻어 있는, 흐트러진 편지들을 다시 모아 묶고 물건들을 정리한 후 박스 뚜껑을 닫으려는데, 문득 떠오르는 낯익은 시구 하나가 먹먹하고 묵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은
언제나
봉투를 닫고 나서야 떠올랐다.'*

창원교도소를 — 참관하고 나서



이현준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3학년

교정시설에 대한 첫인상과 기대

나는 평소 교도소에 대해 영화나 뉴스에서 간접적으로만 접해왔기에, 이번 창원교도소 참관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수용자’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낙인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통해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참관 전에는 교도소가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폐쇄적인 공간일 것이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창원교도소는 단순한 수용의 공간을 넘어,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직원분께서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 열악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봐도 상당히 좁은 곳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생활하구나 라고 느꼈다. 시설은 낙후되었지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느끼게 했다.



교도소의 운영 방식과 수용자의 처우 및 보호장비 체험

시설 및 환경

창원교도소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외부 담장은 견고하고 경비 체계도 철저했으나, 내부 공간은 수용자의 인간적인 삶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 공간 배치, 자연 채광 등을 고려한 모습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업장과 교육시설이었다. 수용자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공, 인쇄, 제과·제빵 등 다양한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활동을 통해 출소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형벌을 가하는 것 이상의,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점에서 큰 감명을 주었다. 특히 제과·제빵 작업장은 창원교도소만의 특별한 직업훈련임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졌고, 빵을 직접 시식해 보았는데 일반 매장에서 파는 빵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목공 작업장에서는 작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형자가 만든 작품을 직접 설명하여 주었다. 정말 고품스럽고,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 새겨진 서랍장이 달린 문갑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편백나무로 만든 도마, 나무로 만든 핸드폰 걸이 등 다양한 교도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성비 좋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는 족구를 하는 사람들과 턱걸이 푸쉬업 러닝 등 다양한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게 생활하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했다.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창원교도소에서는 가족만남의 집,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교도소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들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가족 유대 강화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처우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출소 후 범죄 재범율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수용자도 결국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이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었다.

인권에 대한 배려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 의료 시설, 상담 프로그램,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수용자가 ‘단순히 격리되는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각종 상담은 재범을 막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보호장비 체험

마지막 질문 응답 시간 전에 보호장비 체험이라는 것을 했는데 실제 사용되는 다양한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수갑을 직접 시삽해 보는 체험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손목이 아프고 사람 힘으로 절대 풀지 못할 것 같은 속박감을 느꼈다. 또한 수갑을 직접 교도관께서

시삽하였는데 실제로 수용자들에게 사용하는 강도보다 약하게 사용했는데도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팠다.

테이저건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는데 안전상 등의 문제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고, 교도관님이 직접 천장을 향해 시범 사격했는데 순식간에 침이 천장에 박히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피할 순 없겠다고 생각했다.

교정의 본질과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

이번 창원교도소 참관을 통해 나는 ‘형벌’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단지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조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용자들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올 ‘미래의 이웃’이다. 그런 점에서, 교도소의 역할은 벌을 주는 곳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앞으로 교정행정은 더 열린 시각과 과학적 접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교도소의 노력은 그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짧지만 교정시설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수행자들도 교정시설에서 형기가 종료되면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번 참관을 통하여 ‘그동안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창원교도소 참관수업은 교정시설의 역할과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수용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법과 정의, 그리고 사회 재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교도소는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정·교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정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여 수용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참관수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교정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이고, ‘교정행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관을 위하여 창원교도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친절하게 맞아 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에 옮겨 심은 삶 교정의 마음은 그대로

송근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전지회 회원

INTERVIEW

만들레쉴씨는 바람을 따라 흩날리며 넓게 생명을 틔우고, 난초는 그 향기로 천 리 밖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연의 이치는 이렇듯, 아주 작은 힘으로 스며들며 세상과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흔히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말할 때 자연을 떠올리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전지회(이하 대전지회) 송근수 회원의 삶은 마치, 자연처럼 그 주변을 그윽하고 은은하게 감싸며 흐르고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농업과 정원에서 이어가는 내면의 교정

대전지회의 송근수 회원은 지난 2007년 교정 현장에서 물러선 이래,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본격적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덧 스스로를 ‘농업인’이라 소개하는 그는 난초와 야생화, 각종 묘목을 가꾸는 농업경영체를 운영한다. 퇴임 직후 대전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종시의 조용한 터에 집을 짓고 사는 지금이 송 회원은 더없이 안녕하다고 한다. 경제적 손실이 있기는 했어도,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다. 흙을 만지고 바람과 햇살의 길을 따르는 고요한 삶 속에서 한 뿌리 한 뿌리 뻗어가는 식물처럼, 송 회원은 매 순간 그 내면으로 쌓이는 생생한 이야기가 즐겁고 편안하기만 하다.

“땅의 ‘진실함’이 좋아요.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보답이 있고, 게을리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죠. 아버지께서 식물을 무척 좋아하셔서 자연스레 화초와 나무를 가까이하며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식물과 함께할 때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꼈고, 내내 그때의 감정으로 지나왔어요. 이제 야 농사일 속에서 그 추억을 이어가며 새삼, 삶의 균형과 진실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에요.” 송 회원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삶’은 올해로 5년 차를 맞았다. 그 사이 마당에 세운 40년 된 키위나무가 내는 열매로 때마다 주변에 나눔을

했고, 최근엔 새로 심은 포도나무 ‘루비로망’이 열매를 맺어 삶의 풍성함이 더해진 듯하다. 주인의 손길을 따라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석류나무와 각종 묘목도 마당을 한 편을 채우며 작은 식물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에 들어서면 누구나 자연과 정성 어린 손길이 함께 빚어낸 환대를 경험할 듯싶다. 나를 찾아온 이에게 종자의 특성과 재배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 일차적으로는 송 회원에게 애정 깊거니와,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 잠시라도 여유롭고 평온한 시공간을 향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숨 고르기’가 되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송 회원의 마당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다. 손님에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체험의 공간일 것이며, 적어도 송 회원 자신에게만은 또 다른 의미의 ‘교정(矯正)’이 실현되는 현장 아닐까?

교정인의 삶, 반성과 성찰의 시간

1954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송 회원은 1976년 4월 교정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만학을 결심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였으며, 부모님께 더 이상의 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교정직에 합격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바로 군에 입대한 탓에 본격적으로 교정 업무를 마주한 것은 제대 이후에나 가능했죠. 그때

‘교정·교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하지만 그랬기에 의미와 보람도 더 컸던 것 같고요.”

송 회원은 ‘정신교육교관’이라는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며 수용자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의 엄숙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오랜 기간 민원실에 근무하며 면회객들의 절절한 사연과 눈물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교정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다.

교정인으로서의 성찰은 조용했으나 결코 가볍지 못해서, 한마디 말과 잠깐의 시선에도 무게는 실렸다. 그렇게 그는 ‘교정’이란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적 범주까지 확장해 다뤄져야 할 문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전국의 ‘다루기 힘든’ 수용자들을 맡아 특별 정신교육을 진행한 적 있어요. 1년 반을 부대끼며 변화를 위해 애썼는데, 열악한 환경과 누적된 습관이 본질적인 변화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모두가 새 삶을 다짐했지만, 또 대다수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당시 일부 문맹자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료와 함께 자음과 모음 등 기초적인 글자부터 가르쳤던 게 생각나네요. 눈앞의 작은 성취가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며 그는 교정직의 공적 책무를 깊숙이 실감하게 됐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업고 면회 왔던 젊은 아내를 위로하다, 남편의 수감 상황 속에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상실감에 그 마음이 닿기도 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용이 상대에

게 작은 위로로, 심리적 안정으로, 상황에 대한 덤덤한 수용력으로 닿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며 교정직의 의미와 보람을 충분히 새기기도 했다.

다짐과 약속이 식재된 애란인으로서의 삶

조용하지만 깊고 섬세하게 역할과 사명을 다했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32년을 송 회원은 지난 2007년 마무리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청춘부터 가장 빛나는 시절을 바친 교정 현장이었으니, 그 마음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을 터. 그래도 오랜 기간 품어 온 삶의 밑그림이 있어, 이제는 채색하고 싶었다고 그는 털어놨다.

“청춘을 온전히 바쳤으니 당연히 많이 아쉬웠죠. 하지만 흠을 만지고 바람과 햇살을 벗 삼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줄곧 그려왔어요. 다만 아쉬움은, 퇴임 후에도 교정인답게 봉사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또 동료와 선후배를 향한 약속으로 대신했습니다.” 송 회원은 먼저 그 오랜 그리움을 꽃과 나무가 즐비한 마당에 먼저 피워낸 듯하다. 그리고 바닥 사방에 배수로를 내고, 식물등·에어믹서기·냉각기까지 갖춘 난실에서는 퇴임 당시 동료와 선후배에게 했던 약속을 되새긴다. 물의 양과 빛의 방향, 온도와 바람까지 세심히 살펴야 제 빛깔을 드러내는 난을 돌보며, 그 고고한 품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바로 교정인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송 회원은 종종, 지난 경험의 무게 앞에서 자연스레 숙연해지곤 한다.

‘참진’의 마음, 동우회와 함께 흐르다

교정동우회와의 인연을 묻자, 책갈피를 열 듯 그는 ‘2019년 1월 17일’이라는 정확한 날을 기억해냈다. 신년 하례 겸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가 임

원 선출 과정에서 임시 의장을 맡게 됐고, 여러 사람의 추천 끝에 회장직을 수락하며 본격적인 동우회 활동이 시작됐다고.

“코로나19 이후 동우회 모임과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 무렵 연임하던 대전지회 회장직을 내려놓았지만, 현 임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대전지회의 화합과 발전이 제고되길 늘 기원하고 있어요.”

송 회원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외할아버지 댁에서

본 ‘참진(眞)’ 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글자는 이제, 긴 세월만큼이나 두터운 서사를 담고 그의 삶 속에서 정직·건강·노력이라는 가치로 확장, 해석된다.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정직을 모든 인간관계와 일의 기본 삼고, 건강으로 그 모두를 뒷받침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송 회원의 신념이다. 바로 교정동우회를 통해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싶은, 교정인으로서 지닌 그의 애정과 자부심이기도 하다.





오각형 건물 속의 숨은 기능, 효율적 동선으로 관리 최적화

충주구치소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송강리 상산(上山)마을과 영덕리의 계척(桂尺)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 산척면이 됐다. 또한 하늘로 오르는(天登) 길인 '천등산'의 가장 지척에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뜻의 산척면이기도 하다. 가사는 몰라도 제목은 익숙한, '천등산, 울고 넘는 박달재'의 그곳에 대전지방교정청의 산하 기관인 충주구치소가 자리하고 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법과 인권의 상징, 오각형 구조의 비밀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장기 수용하며 교정·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시키는 기관이다. 반면 구치소에서는 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임시 수용·관리한다. 때문에 '구치소'는 단순한 '수용 공간'이라기 보다는, '법질서의 신뢰와 수용자 인권 보호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큰 교정 기관이다.

충주구치소 역시 충청권 북부 지역에서 미결수용자를 관리하며 재판 준비 수용자들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진다. 업무의 범위 또한 시설 운영과 수용자 관리라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 법원의 사법 절차 지원과 수용자 권리 보장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할은 곧 법치와 정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인데, 충주구치소 또한 어느덧 지역 주민과 수용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2003년 12월 30일 신설된 충주구치소는 2004년 12월 3일 정식 개청했다. 오각형 구조의 설계로 동선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청사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는 각각 수용동으로 이어지는 보안과의 현관과 민원봉사실 겸 미소갤러리의 현관을 냈다.

건물 뒤편의 두 면은 수용동의 후면이자 수용자의 시선에 닿지 않는 구역이다. 이는 외부와 내부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 덕분이다. 특히 수용동 후면 너머의 구역이자 건물 안쪽의 정중앙에 자리한 오각형의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니라, 시설 내부만을 볼 수 있는 수용자들에게 심신 안정의 효과를 제공한다. 교도관에게는 효율적인 관리의 공간이자, 수용자에게는 닫힌 울타리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개방의 공간'인 것이다.

이처럼 충주구치소는 펜타곤 형식의 건물 하나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 업무와 직원 식사만 별도의 건물에서 이뤄지는데, 이 또한 내부 공간을 수용자 관리와 교정 활동에 집중하면서 직원들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상생 추구하며 통합적 접근으로

약 5만 평 규모의 부지 위에 자리한 독창적 빌딩형 구조의 충주구치소는 4개 층, 11개 수용동, 4개의 작업장, 가족만남의 집, 대강당, 의무교도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현재 수용 인원의 대부분은 미결수용자로, 안정적인 관리와 안전한 시설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수용을 넘어, 민원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미소갤러리'와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펜션형 '가족만남의 집'을 마련하는 한편, 성폭력·마약류 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위탁 작업장 운영, 취·창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충주구치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사회복지시설인 오은샘별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지원하며,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통해 지역 독거노인을 후원하는 등 이웃과의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수용자들을 대상



으로는 '보라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고,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지역 현장과 호흡하는 교정 문화를 실천하게 한다.

이와 함께 세명대학교·중앙탑중학교 등 지역 학생들에게는 시설 참관과 교도관 직업체험을 제공, 법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교정행정을 알리는 데 앞장선다. 아울러 지역 현열센터와 협력해 상·하반기 현열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교정정책자문위원회회를 통해 지역 전문가들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해 가면서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도 한다. 결국 충주구치소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교정 기관의 통합적 접근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용자 개개인의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시설 내 11개의 수용동과 4개의 작업장, 가족만남의 집, 대강당, 의무교도대 등 모든 시설이 단순한 수용 공간을 넘어 수용자의 권익 보호와 재활을 돕는 실질적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펜션형 가족만남의 집과 미소갤러리는 수용자와 가족 간의 유대 회복을 지원



하고, 성폭력·마약류 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교육 등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교정·교화 활동으로 유익하다.

‘회복’ 중심에서, ‘안전’과 ‘안정’ 향해

충주구치소의 교정철학은 명확하다. 주된 목적이 처벌이 아닌, ‘회복’과 ‘재사회’라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주구치소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성폭력·마약류 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직업훈

련과 위탁 작업장도 가동 중이다. 취·창업 지원 교육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귀휴 프로그램까지,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일을 설계하며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이곳 충주구치소 직원들의 일상인 것이다.

안전과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다.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한 외곽 철조망 정비와 위험 요인 제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와 옥상 방수, 산사태 대비 비상대기소 경계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 도시가스 도입 등 시설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강화된 출입통제,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방역 체계 역시 수용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로 자리 잡았다.

직원 문화와 조직 분위기도 충주구치소 운영의 중요한 축이다. 약 130명의 직원은 축구·야구·테니스 등 13개 직장 동호회를 통해 여가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교정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1인실 리모델링, 휴게실 개선, 도시가스 도입 등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 충주구치소는 이렇듯, 펜타곤 형식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단순한 시설 관리자가 아닌, 함께 일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담장을 넘어, 새로움을 꿈꾸다

앞으로 충주구치소는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관계 회복 지원과 재범 방지,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설 안전과 위생 환경을 개선해 수용자와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교정 기관의 담장은 높지만, 충주구치소의 목표는 담장을 넘어서는 일에 있다.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수용자의 마음과 직원의 자긍심을 함께 품는 공간. 충주구치소가 만들어 가는 작은 변화와 노력은 오늘도, 사람과 사회를 동시에 품는 교정의 미래로 성실하게 이어져 간다.





전문성과 협업으로 떠가는 직원·수용자의 '마음 회복'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

씨실과 낯설처럼 전문성과 협업으로 서로가 잇닿아 있는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 일상에서는 세심하고, 위기 앞에서는 빠르고 침착하게 '마음'을 보살피는 이들은 안정과 회복의 직조를 내담자의 내면에 차곡차곡 심어 간다. 그렇기에 '교정 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지만 오늘은 평범하게 웃고, 내일을 꿈 꾸기도 하며, 희망이라는 것도 조금씩 품어본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교정 현장의 '마음 안전망' 짜기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교정시설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직원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근무지의 특성과 난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다,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시간적 여력이 없어 먼저 찾아오지 못하는 이들과 살피려는 세심한 배려에서다. 이러한 노력은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는 동시에,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심리치료팀 구성원들 또한 스스로 웃음을 잃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현장을 지켜나가려 한다.

또 한편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애쓴다. 범죄 원인에 따라 수용자의 성향이 분석되면, 이에 맞춘 교육과 상담이 그 즉시 맞물린다. 특별히 충주구치소의 중점 사업이 바로 성폭력사범과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기도 하기에, 수용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이야말로 심리치료팀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불안·위축을 달래는 손길

구치소는 장기 수형자를 중심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교도소와는 달리, 재판을 앞둔 미결수나 형 집행 전 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 기관이다. 달리 말하면 구치소의 수용자들은 교도소의 수용자들보다 자유의 제약, 사회적 긴장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더 많이 느낀다는 뜻이다. 자연히, 불안과 위축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구치소 내 심리치료팀은 지속적인 개별 상담을 통해 수용자들이 심적 안정을 찾고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이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상담 체계를 마련, 수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의 정신적 안정을 지켜내는 버팀목과도 같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교정 현장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실천하며, 교정·교화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성실성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전문성의 합, 협업의 힘으로 대응 강화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의 심리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임상 심리사, 중독심리사, 생애위기상담사 등 각기 다른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방식은 결코 '따로'가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수용자를 여러 눈으로 살펴보고, 최적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협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우선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와 진단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면, 중독심리사가 그 결과를 토대로 약물·도박·알코올 문제의 개입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에 가족 갈등, 수용 생활 적응, 자살 위험 등 개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생애위기 상담사의 진단이 더해지면 수용자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후 회의를 통해 각자의 소견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는 구조다.

집단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분노 조절이나 자아존중감 회복 프로그램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 명은 이론적 틀을 설명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실제 사례와 연습을 맡아 진행하는 식이다. 바로, 강의하듯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닌, 서로 역할을 바꿔 보게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보다 다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심리치료팀의 협업은 긴급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자해 위험이 감지되면 생애 위기상담사가 현장을 안정화하는 사이, 임상심리사가 투입돼 바로 심리를 평가해 위험 수준을 판단한다. 물론, 필요할 경우 중독심리사가 후속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최적의 순간’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발휘하며 그 자리를 채우는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의 ‘침착하고 유기적인’ 대응 방식에서 나온다.

결국 심리치료팀의 가장 큰 힘은 ‘전문성의 합’을 이루는 협력체계에 있다. 네 명의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수용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더 깊고 세밀하게 돌보는 원동력인 셈이다. 이렇듯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일상적 상담에서는 세밀한 치유 과정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지켜내고 있다.

맞춤형 운영으로 ‘법적 의무’·‘재활 지원’ 동시에

대전지방교정청 관할 구치소라는 특성상, 충주구치소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출소에 정일까지 잔형기가 짧은 수용자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은 수용생활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여섯 가지 범죄 유형(성폭력, 마약류 등 약물중독,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동물학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지만, 잔형기가 짧아 전담기관으로

이송이 어렵기도 하다. 이에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수용자의 개별 상황에 맞춘 집중적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팀원 모두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이어왔다. 그 결과, 마약·알코올·성폭력 등 주요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 없이 직접 진행하며, 몇 년째 강사로 ‘제로’를 유지하는 자립적 운영으로 팀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단순히 상담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곡된 인식 교정’에서부터 출소 후 사회복귀와 정착 지원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적 의무와 재활 지원을 동시 충족하는 ‘수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안정’·‘회복’ 향한 쉽 없는 경주

수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생활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이수명령이 병과된 수용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정 기관 심리치료과의 업무 부담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다행히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편이다.

물론,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 보충 등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는 한결같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와 마약재활팀의 노력으로 각 범죄 유형별 프로그램 메뉴얼이 개발·보급된 만큼,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이를 충실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해 교정본부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mini interview

양상열 보안과장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수용자들의 ‘마음 회복’이 시설에서는 물론, 출소 후의 삶에서도 유효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심리치료가 일시적 위안이 아닌,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 하죠. 형 확정과 동시에 여러 이수명령을 받는 수용자들이 많다는 특성상 저희 프로그램은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회복과 사회적 적응까지 고려해 설계됩니다. 그래서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내부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변화와 희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힘이 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상)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차

- I. 들어가며
- II. 영국의 교정환경 및 교정처우의 현실
- III.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
- I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책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영국 교도소, 영국 교도소 과밀화, 영국 교도소 개혁, 영국 교도관, 영국 구금형주의 형사정책



I. 들어가며

최근 연이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고(서울신문, 2024. 4. 8.),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하는 추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¹⁾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영국 역시 오래전부터 교도소 과밀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도소 개혁전략을 제시했다. 2024년 7월 4일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에 압승한 노동당 정부(Glober Legal Post, 2024. 7. 5.)의 혼 샤바나 마흐무드(Rt Hon Shabana Mahmood KC) 신임 법무장관 역시 취임 연설에서 영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안을 들었다(GOV.UK, 2024. 7. 16.). 그는 장관 취임 후 일주일 후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영국 전역의 교정시설 잔여 수용실은 300여 실이며, 앞으로 9월이 되면 영국 교정시설²⁾은 완전한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신규 입소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40%를 복역하면 석방, 교정시설을 늘리고, 보호관찰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2023년도 전임 법무장관이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UK Parliament, 2023).

이미 영국의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비인도적 처우,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수용자의 자해, 교도관의 일탈, 수용자의 고령화 등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BBC, 2024. 7. 29.; Danely, Mann, & Reeves, 2024). 특히 교정시설 내 약물중독도 심각하여 약물중독 사망자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71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Duke, MacGregor, 2024).

- 1)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은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https://han.gl/fLvDj>).
- 2) 영국,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도소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및보호관찰서비스(His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의 교정국(HM Prison Service)이 관장한다. 영국의 교도소는 성인남자교도소, 여자교도소, 청소년교도소(Young Offender Institution), 청소년구치소(Youth Custody) 등으로 구분되며, 모두 123개소가 있다. 이 중 15개소는 Serco, G4S, Sodexo Justice Services와 같은 민간교정회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교정국이 운영하는 교도소는 교도소명 앞에 왕립교도소(His Majesty's Prison: HMP)를 표기한다(예: HMP Leyhill). 수용자는 탈출위험, 탈출 시 공공안전 위험, 교도소의 통제와 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최고보안등급인 A형 교도소에서부터 최저보안등급인 D형 개방교도소에 배치된다(GOV.UK, <https://han.gl/L1d2L>).

따라서 이 연구는 영국 교정당국이 처한 교정환경 및 교정처우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제시하는 교도소 개혁전략의 딜레마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영국의 교정환경 및 교정처우의 현실

1. 수용인구의 지속적 증가추세

영국,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는 134명이다. <그림 1>과 같이 영국의 수용인구는 201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18년에 82,200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 영국의 교도소 수용인구 추세



자료: Sturge, 202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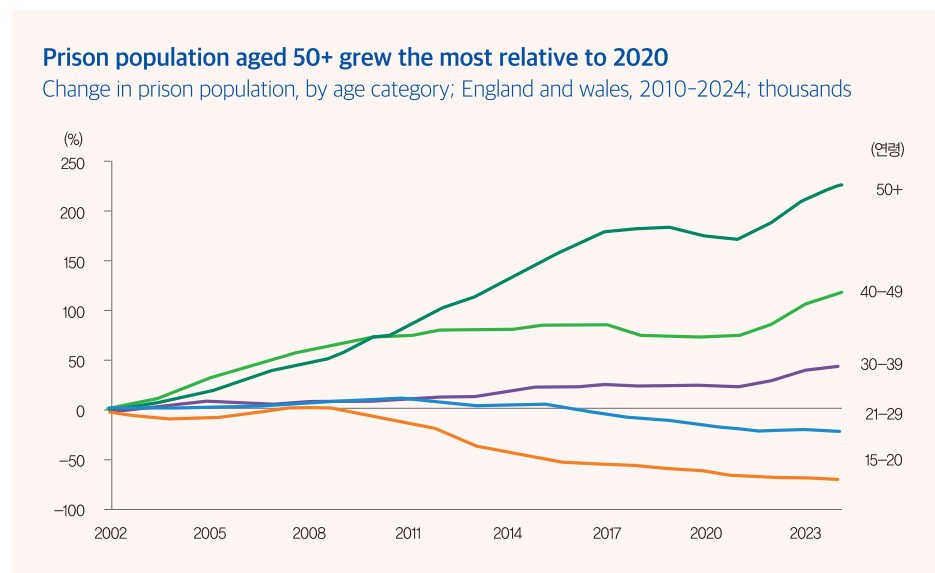
이후 코로나 사태로 수용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87,9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영국의 수용인구는 2027년까지 최소 95,100여 명에서 최대 114,200여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교정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2. 장기형 수용인구의 증가 및 단기 수용인구의 지속적 유입 등

2024년 3월 말 기준 수용인구 비중은 1~4년 형기 23%, 4년 이상 형기 57%, 종신형 15%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동안 4년 이상 장기형 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단기형 수용인구 역시 일정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입출소 관련 사무 처리를 반복하는 등 교도관에게 업무 부담을 주고, 시설 과밀화를 촉발하였다. 종신형 수용인구도 일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견인하고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그림 2>와 같이 수용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즉 21세 미만은 2002년 이후 감소하여 4%를, 21세에서 29세 사이도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여 24% 정도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수용인구 비중은 2011년 수용인구의 10%에서 2024년 21%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수용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출소 후 재범률이 높아 재수용되는 것이 커다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용인구 고령화는 교정시설의 전면적인 개선 및 노인성 질환 수용자에 대한 장기적인 처우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Blundell-White, Harrison, & Hill, 2023).

<그림 2> 영국의 연령별 교도소 수용인구



자료: Sturge, 2024; 13.

3. 수용인구의 소수민족 및 특정종교 편향성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구 중 27%가 소수민족 출신으로 이는 일반 인구 비중 18%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Sturge, 2024: 15).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수용인원 87,859명 중 인종적으로는 백인 72%, 63,103명(전체 영국인 중 백인 82%)을 차지하며, 흑인 12%, 10,624명(전체 영국인 중 흑인 4%), 아시안계 8%, 7,067명(전체 영국인 중 아시안계 9%) 등으로 나타나 흑인이 전체 인구비중 보다 수용인구 비중이 높다.

영국 수용인구의 종교적인 편향성도 뚜렷하다.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수용인원 87,859명 중 기독교인 44%, 39,068명(전체 영국인의 기독교인 비중은 46%), 이슬람교인 18%, 15,909명(전체 영국인의 이슬람교인 비중은 7%), 무종교인 31%, 27,122명(전체 영국인의 무종교인 비중은 37%) 등으로 나타났다(Sturge, 2024: 16). 즉 이슬람교인의 수용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비중에 비해 높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 수용자 중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두 종교의 오랜 역사적인 마찰과 갈등 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한 갈등적 요인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4. 교정시설의 만성적 과밀수용

영국의 1952년 교도소법 제14조(Prison Act 1952, s.14)는 모든 교정시설은 양호하고 적절한 수준의 숙박 시설임을 인증하는 표준편의인증(Certified Normal Accommodation: CNA)을 받아야 하고,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거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³⁾

3) 영국교도소법 제14조(Prison Act 1952, s.14) 제1항, 국무장관(법무장관)은 모든 교도소에서 모든 수감자를 위한 충분한 숙박 시설이 제공되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2항, 수용실은 검사관이 크기, 조명, 난방, 환기 및 설비가 건강에 적합하고 수용자가 언제든지 교도관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인증받지 못하면 수용자를 구금할 수 없다. 제3항, 모든 수용실에 대해 발급된 증명서에 수용자의 구금기간 및 수용실의 구금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4항, 증명서에는 수용실을 번호 또는 식별이 가능한 표시로 분류하며, 수용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검사관의 승인 없이 번호 또는 표시가 변경되면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 제5항, 검사관은 수용실의 조건이 증명서에 명시된 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6항 모든 교도소에는 저항적이거나 폭력적인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기 위한 특별 거실을 두어야 한다(legislation.gov.uk, <https://han.gl/241HB>).

그런데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영국의 교정시설 중 60%인 71개 교정 시설이 과밀수용이며, 수용 여력이 있는 교도소는 대부분 여성전용교도소, 청소년 보호시설(YOI) 또는 고도 보안교도소(A등급) 등 특수시설로 그 활용이 매우 제한 적이었다.

CNA 인증 교정시설은 과밀 상태로 2023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수용정원 78,511명보 다 9,714명이 더 많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The guardian, 2023. 10. 15.).

<표 1> 영국의 교정시설 수용률

구분	수용가능인원	현재수용인원	잔여	수용률(%)
06/03/2023	80,853	80,295	558	99.31
05/06/2023	82,011	81,511	500	99.39
04/09/2023	83,672	83,070	602	99.28
04/12/2023	84,603	83,840	763	99.10
04/03/2024	84,732	84,328	404	99.52
03/06/2024	84,519	83,528	991	98.83
08/07/2024	84,463	83,755	708	99.16

자료: Ministry of Justice, 2024: 4-6. 재구성.

CNA를 갖춘 교도소를 기준으로 수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표 2>와 같이 더럼교 도소(HMP Durham)로 170%, 리즈교도소(HMP Leeds)는 168%를 수용하고 있다. 다트무어교도소(HMP Dartmoor)는 38%의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BBC, 2024. 6. 29.).⁴⁾

영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당시 수용률 158%를 보인 윈즈워스교도소(HMP Wandsworth)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수용자가 탈출하여 3일 동안 런던 전역을 배회하였다.

4) 다트무어교도소의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 교도소에서 발견된 라돈 가스 때문에 이 교도소 수용자들을 인 근의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였기 때문이다. 이 교도소에 대한 2020년과 2023년도 조사에 따르면 감지된 최 대 라돈 수치는 교정시설 권장 한도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BBC, 2024.6.29.).

<표 2> 영국의 최고 및 최저 교도소 수용률

교도소명	수용률(%)	교도소명	수용률(%)
Durham	170	Kirkham	89%
Leeds	168	Belmarsh	88
Preston	159	Ford	87
Wandsworth	158	Woodhill	87
Bedford	158	Sudbury	85
Lincoln	152	East Sutton Park	83
Doncaster	152	Askham Garng	77
Altcourse	149	Werrington	77
Exeter	146	Wetherby	51
Swansea	145	Dartmoor	38

자료: Sturge, 2024: 17. 재구성.

그런데 이 교도소의 독립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 IMB)⁵⁾는 2022-2023년 연례감시보고서를 통하여 “만성적인 과밀수용으로 안전하지 않으 며(Unsafe), 비인간적이며(Inhumane),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IMB, 2022). 또한 이 교도소에서는 “1인 수용실을 2인이 사용하며, 남성 수용자 265명당 샤워실이 11개밖에 없으며, 의료진이 없어 자체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며, 수용자들 간 폭행과 수용자들에 의한 교도관 폭행이 매주 10여 건씩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 를 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IMB, 2023).

5) 1952년 교도소법(Prison Act 1952)과 1999년 이민및망명법(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은 법무 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교도소와 이민자 구금시설 등을 감시하는 독립감시위원회 (Independent Monitoring Board: IMB)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원은 자원봉사자 지위를 가지며, 무보수 이다. IMB는 교정시설 및 이민자구금시설 등에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고,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수 용자의 불만과 청원을 듣고, 법률 위반 발견 시 장관에게 통보하며, 구금시설별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 개한다. IMB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보고서는 네 가지 영역에 따라 시설 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담는다. 주요 내용은 ① 안전(폭력 및 화재 대책, 보호 및 무력 사용 포함), ② 인도적 대우(분리/분리, 평등 및 숙박 포함), ③ 건강 및 웰빙(1차 진료, 정신건강, 운동,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스포트 스킬(의사소통, 적극적 청취, 리더십, 문제해결, 시간관리,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등), ④ 진행 및 석방(교육, 훈련, 범죄자 관리 및 석방 또는 이송 준비 포함) 등이다(IMB, <https://han.gl/A6bY3>).

5. 교도소 관리의 문제

영국 법무부는 울타리, 자물쇠, 볼트와 막대, 안전한 차량 또는 수갑과 같은 물리적 보안 제한을 극복하여 합법적인 권한 없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을 이탈하는 행위를 탈출(Escapes)이라고 한다(UK Ministry of Justice, 2024. 7.). 탈출은 주로 보안등급이 높은 폐쇄형 교정시설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수용자가 특별한 물리적 제한 없이 교정시설을 이탈하는 행위를 도주(Absconds)라고 하며, 주로 개방형 교도소에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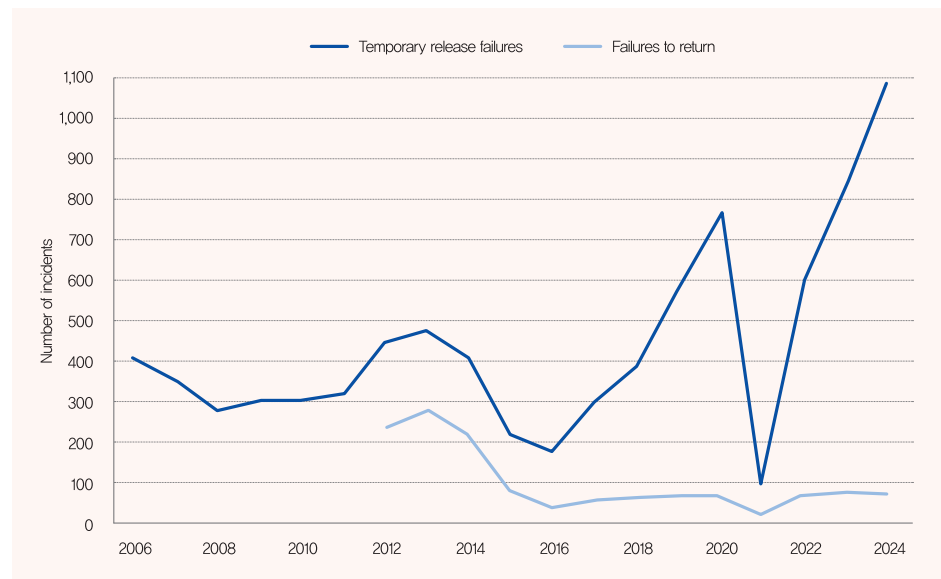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9건의 탈출이 있었고, 그중 1건은 탈주범을 체포하지 못했다. 도주범은 58건으로, 전년도 63건에 비해 8% 감소한 것이다. 도주범 중 15명은 30일이 지난 후에도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정부가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수용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며,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임시석방허가(Releases on Temporary Licence) 대상자들의 실패율이 <그림 3>과 같이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높아졌다. 임시석방의 실패란 임시석방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귀소하지 않는 것으로 2022/2023년 동안 임시석방자 425,095명 중 985명이 실패하였다. 이는 전년도 보다 임시석방허가 대상자는 10% 증가한 것이고, 실패자의 경우 32% 정도 증가한 것이다(Ministry of Justice, 2024: 10).

임시석방의 실패는 지나치게 엄격한 준수조건을 실천하기 어렵고, 열악한 교정시설로의 복귀를 기피하는 심리 때문으로 나타났다. 임시석방제가 수용자의 사회정착을



<그림 3> 영국의 교정시설 임시석방 수용자의 미복귀 추세



자료: Ministry of Justice, 2024: 10.

돕는 것이 아니라 구금 회전문(Detention revolving door)에 들어서게 하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racknell, 2023).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영국 교정당국은 업무 착오로 출소 대상자가 아닌 수용자를 매년 50여 명 석방하여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에는 무려 87명을 석방하여 23% 증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법상 정신장애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구금시킬 수 없고, 28일 이내에 정신병원으로 이송토록 규정되었지만 15% 정도만이 기간 내에 이송되고, 최대 460일간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Taylor, 2024).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정신장애 수용자들에 의한 자해, 자살, 약물중독, 폭행 등의 교정사고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BBC, 2024. 2. 19.).

또한 교도소 수용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물은 신규 입소자, 면회객, 부패한 교도관이나 드론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선별적 약물검사 결과 C보안등급인 힌들리교도소(HMP Hindley) 50%, 로담그랜지교도소(HMP Lowdham Grange) 40%, A보안등급인 우드힐교도소(HMP Woodhill) 42% 정도 양성반응을 보였다. 베드포드교도소(HMP Bedford) 등 일부 교도소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수용자에 대한 약물검사를 아예 시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6. 다양한 교정사건의 지속적 증가

영국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및 국가범죄자관리원(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에서 교정시설 내 사망, 자해 및 폭행 사고에 대한 공인된 통계 즉 구금안전통계(Safety in custody statistics)를 분기별로 발표한다.⁶⁾

202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은 모두 308건으로 이 가운데 자해 사망자는 85명으로 전년도 92명에 비해 감소했다. 자해 사망률은 수감자 1,000명당 약 1.0명 수준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자해 사건은 73,804건이고, 수용자 1,000명당 852건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Justice, <https://bully.kr/7x4kxTD>). 이는 전년도 대비 24%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자해는 3,050건으로 남성 교정시설은 23%, 여성 교정시설의 경우 30% 정도 증가하였다. 여성 교정시설이 자해 건수는 적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해 사건의 증가 폭이 큰 것은 일부 수용자들의 습관성 자해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6) 구금안전통계는 사망사건은 반기별로, 폭행사건은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식통계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도 사망사건은 202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폭행사건 등은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통계를 분석, 활용한다.

폭행과 교도관에 대한 폭행, 심각한 폭행⁷⁾ 등 교정시설 내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범죄 사건도 증가하였다.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수용자와 수용자 간 지난 1년 동안 전체 폭행 사건은 28,292건으로 전년도 대비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 교정시설의 폭행 건수는 12개월 동안 26% 증가한 26,375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9% 더 높아진 것이다. 여성 교정시설의 폭행 건수는 1,917건으로 36%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5%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수용인구 1,000명당 폭행 건수는 남성 수용자가 317명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544건으로 더 높았다. 이는 교정시설 내 폭행 건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비이다.

한편 2024년 3월까지 전체 폭행 건수 가운데 수용자의 직원에 대한 폭행이 9,847건 발생으로 35%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용자의 직원에 대한 폭행은 남자 교정시설은 수용자 1,000명당 114건, 여자 교정시설은 286건으로 남자 교정시설의 경우 전년도보다 22%, 여자 교정시설의 경우 42%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폭행 사건 28,292건 중 심각한 폭행 사건은 11%, 3,215건이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대상자 별로는 수용자 간 24%, 수용자의 직원에 대한 경우는 32% 정도 증가하였다.

▶ 다음 호에 이어서

7) 폭행은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가벼운 밀침, 욕설, 때리는 모션 등을 말하고, 심각한 폭행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력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행, 뇌진탕 또는 골절, 화상 또는 찰림, 짓눌림, 광범위하거나 다발성 타박상, 멍든 눈, 코 부러짐, 치아 분실 또는 부러짐, 봉합이 필요한 상처, 물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실명 등을 말한다(Ministry of Justice, <https://bully.kr/7x4kxTD>).

마약류사범에 대한 ——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하)

- 교정시설 재활교육을 중심으로 -



김도균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목차

- I. 서론
- II. 마약류사범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참고문헌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기술통계량을 통해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재범여부의 경우 연구 대상 931명 중 ‘미재범’으로 확인된 사람은 506명(54.35%), ‘재범’으로 확인된 사람은 425명(45.6%)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 출소자의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인 36.3%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출소 3년 경과 후에도 재범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출소 후 관찰 종결 시점까지 평균 생존시간은 1,416일이며, 최솟값은 10일, 최댓값은 2,457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 재활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439명(47.1%)이며,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492명(52.9%)이다. 재활교육 이수시간의 평균은 약 13시간(최솟값: 0, 최댓값: 151)이며, 연구 대상 931명 중 64명(7%)만 30시간을 초과하였고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재활교육을 이수한 연구 대상 간 재활교육의 이수시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6세(최솟값: 22세, 최댓값: 65)이며, 남성이 867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2018년~2022년 연평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전체 수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93% 내외이고, 여성 수용자는 7% 내외에 불과한 현실(법무부, 2023)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 중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졸업 151명(16.2%), 중학교 졸업 285명(30.6%), 고등학교 졸업 이상 495명(53.1%)이다.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인 사람 327명(35.1%), 무직인 사람 304명(32.7%)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의 직업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의 대부분인 822명(88%)가 형기 2년 6개월 미만이었으며, 범죄경력은 1범 305명(32.7%), 2범 313명(33.6%), 3범 이상 313명(33.6%)으로 분포되었다. 징벌 횟수는 평균 0.711회(최솟값: 0, 최댓값: 11)로 나타났다.

출소 후 재범환경이 양호인 사례는 1명(0.1%), 보통은 180명(19.3%), 불량은 506명(54.3%), 매우 불량은 244명(26.2%)으로, 공권력에 대한 태도가 양호인 사례는 24명(2.5%), 보통은 93명(9.9%), 불량은 413명(44.3%), 매우 불량은 401명(43%)으로,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이 양호인 사례는 12명(1.2%), 보통은 96명(10.3%), 불량은 261명(28%), 매우 불량은 562명(60.3%)으로 나타나 재범의 위험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기술통계량

변수명	M	SD	MIN	MAX
종속변수				
재범여부(미재범: 0, 재범: 1)*	0.456	0.498	0	1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일)	1416	771	10	2457
독립변수				
재활교육 경험(미교육: 0, 교육: 1)*	0.471	0.499	0	1
재활교육 이수시간(시간)	13.315	24.388	0	151
통제변수				
연령(세)	46.852	8.304	22	65
성별(남: 0, 여: 1)*	0.068	0.253	0	1
학력: 초등학교이하 졸업(무: 0, 유: 1)*	0.162	0.368	0	1
학력: 중학교 졸업(무: 0, 유: 1)*	0.306	0.461	0	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무: 0, 유: 1)*	0.531	0.499	0	1
직업: 단순노무종사자 외 직업(무: 0, 유: 1)*	0.322	0.467	0	1
직업: 단순노무종사자(무: 0, 유: 1)*	0.351	0.477	0	1
직업: 무직(무: 0, 유: 1)*	0.326	0.469	0	1
형기: 1년 미만(무: 0, 유: 1)*	0.212	0.409	0	1
형기: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무: 0, 유: 1)*	0.374	0.484	0	1
형기: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무: 0, 유: 1)*	0.206	0.404	0	1
형기: 2년 이상 ~ 2년 6개월 미만(무: 0, 유: 1)*	0.089	0.285	0	1
형기: 2년 6개월 이상(무: 0, 유: 1)*	0.117	0.321	0	1
범수: 1범(무: 0, 유: 1)*	0.327	0.469	0	1
범수: 2범(무: 0, 유: 1)*	0.336	0.472	0	1
범수: 3범 이상(무: 0, 유: 1)*	0.336	0.472	0	1
징벌 횟수	0.711	1.322	0	11
출소 후 재범환경: 양호(무: 0, 유: 1)*	0.001	0.032	0	1
출소 후 재범환경: 보통(무: 0, 유: 1)*	0.193	0.395	0	1
출소 후 재범환경: 불량(무: 0, 유: 1)*	0.543	0.498	0	1
출소 후 재범환경: 매우 불량(무: 0, 유: 1)*	0.262	0.440	0	1
공권력에 대한 태도: 양호(무: 0, 유: 1)*	0.025	0.158	0	1
공권력에 대한 태도: 보통(무: 0, 유: 1)*	0.099	0.300	0	1
공권력에 대한 태도: 불량(무: 0, 유: 1)*	0.443	0.497	0	1
공권력에 대한 태도: 매우 불량(무: 0, 유: 1)*	0.430	0.495	0	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양호(무: 0, 유: 1)*	0.012	0.112	0	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보통(무: 0, 유: 1)*	0.103	0.304	0	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불량(무: 0, 유: 1)*	0.280	0.449	0	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매우 불량(무: 0, 유: 1)*	0.603	0.489	0	1

* 표시된 변수들은 이분형으로 측정되어 평균은 비율을 나타냄

2.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토

단계적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미재범 집단이 재범 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예상대로 재활교육 여부에 따른 재범 발생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8.719$, $p<.01$), 재활교육 이수시간($t=-0.37$, $p=0.709$), 연령($t=1.24$, $p=0.216$), 성별($X^2=0.2153$, $p=0.643$), 학력($X^2=0.388$, $p=0.824$), 직업($X^2=1.984$, $p=0.371$), 형기($t=-1.30$, $p=0.193$)와 재범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범죄경력(범수)은 미재범집단(평균: 0.828)이 재범집단(평균: 1.224)보다 낮았고($t=-7.56$, $p<.001$), 징벌 횟수도 미재범집단(평균: 0.632)이 재범집단(평균: 0.804)보다 더 낮았으며($t=-1.98$, $p<.05$), 출소 후 재범환경도 미재범집단(평균: 2.011)이 재범집단(평균: 2.131) 보다 낮았다($t=-2.71$, $p<.01$). 공권력에 대한 태도도 미재범집단(평균: 2.185)이 재범집단(평균: 2.390)보다 낮은 값을 보였고($t=-4.26$, $p<.00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역시 미재범집단(평균: 2.420)이 재범집단(평균: 2.538)보다 낮았다. 통제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요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모두 1점대(최솟값: 1.038, 최댓값: 1.253)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설 1-1 검정을 위한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재활교육 경험여부)와 통제변수 중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 성별, 학력, 직업)만을 반영하였고, 2단계에서는 형기, 범수, 징벌 횟수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출소 후 재범환경과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까지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포함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다.

가설 1-1 검정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는바, 연속형 변수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R^2 으로 각 모델의 설명력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적합한 Max-rescaled R^2 을 사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분석하면, Max-rescaled R^2 은 모형1에서 0.0168, 모형2에서 0.0979, 모형3에서 0.1111로 나타났다. 한편, 로그 우도(Log-Likelihood)를 변형한 -2 Log L 값은, 모형1에서 1235.392, 모형2에서 1160.902, 모형3에서 1137.729로 나타났다. -2 Log L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으므로, 모형1보다 모형2가, 모형2보다

모형3이 적합한 모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예측력을 의미하는 AUC는 그 값이 0.5인 경우 모형이 무작위 추측과 같은 예측력이며, 1에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AUC는 모형1에서 0.5637, 모형2에서 0.6549, 모형3에서 0.6645로 나타났으므로, 모형3이 세 모형 중 가장 예측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와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3을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면, 우선 ‘재활교육 경험’의 회귀계수 β 의 추정치는 -0.2642, 오즈비 $\text{Exp}(\beta)$ 값은 0.768로 나타났다. 이는 재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을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약 23.2% 감소함을 의미하나, p값이 0.066로 통상적인 유의수준($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의 회귀계수 추정치가 -0.020, 오즈비는 0.980로 ($p < .05$)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재범의 오즈비는 약 2% 감소하며, 이는 Laub & Sampson(2001)이나 Piquero et al. (2003)의 범죄자의 나이가 들면서 결혼, 취업 등 중요한 삶의 변화를 겪으며 범죄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Gottfredson & Hirshi(1990)가 가정한 나이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죄 감소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범죄경력을 측정한 ‘범수’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0.578, 오즈비는 1.783으로($p < .001$) 범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재범 오즈는 약 7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과가 재범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예: 윤정숙 외, 2021)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0.273, 오즈비는 1.314로($p < .01$),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재범 오즈는 약 3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 탈선’과 ‘법적 냉소주의’는 재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Jang & Na(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성별’, ‘학력’, ‘직업’, ‘형기’, ‘징벌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과 재범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윤정숙 외(2021)가 ‘성별’과 ‘출소 후 재범환경’,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을 일반 범죄자의 재범여부 예측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있어, 마약류사범과 일반 범죄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3〉 가설 1-1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 재범여부)

변수		미재범(=0) 대 재범(=1)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SE	β	SE	β	SE
상수		0.5322	0.4040	0.0297	0.4315	-0.6040	0.4948
재활교육 경험 (미교육(준거): 0, 교육: 1)		-0.3789**	0.1357	-0.2719†	0.1424	-0.2642†	0.1436
연령		-0.00883	0.0081	-0.0169*	0.0085	-0.0197*	0.0087
성별(남성(준거): 0, 여성: 1)		-0.1290	0.2726	0.0138	0.2800	0.0616	0.2855
학력 (준거: 고졸 이상)	초졸 이하	0.0633	0.1897	0.00447	0.1970	-0.0303	0.2008
	중졸	-0.0527	0.1509	-0.1043	0.1568	-0.1382	0.1585
직업 (준거: 무직)	단순노무						
	종사자 외 직업	-0.1042	0.1663	-0.0218	0.1722	-0.0190	0.1732
	단순노무 종사자	-0.1906	0.1633	-0.1657	0.9598	-0.1577	0.1705
형기				0.0933†	0.0557	0.0781	0.0564
범수				0.6201***	0.0877	0.5780***	0.0912
징벌 횟수				0.0430	0.0523	-0.00493	0.0549
출소 후 재범환경						0.0704	0.1096
공권력에 대한 태도						0.2729**	0.1049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0.0416	0.1062
-2 Log L		1235.392		1160.902		1137.729	
AUC		0.5637		0.6549		0.6645	
Max-rescaled R²		0.0168		0.0979		0.111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1-2 검정을 위한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재활교육 이수시간’과 재범 간 관계는 예상과는 달리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이수자 대부분이(93%) 교육이수 시간을 30시간 이하로 경험하였고, 실제 교육을 받은 시간이 개인별로 거의 비슷하여 변수 값의 개인 간 변동이 매우 미미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앞선 〈표 3〉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표 4〉 가설 1-2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 검정 결과(종속변수: 재범여부)

변수	미재범(=0) 대 재범(=1)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SE	β	SE	β	SE
상수	0.3861	0.3984	-0.0863	0.4287	-0.7149	0.4938
재활교육 이수시간	0.00194	0.0027	-0.00079	0.0028	-0.00098	0.0028
연령	-0.0103	0.0082	-0.0174*	0.0085	-0.0201*	0.0087
성별(남성(준거): 0, 여성: 1)	0.0154	0.2686	0.1027	0.2767	0.1479	0.2818
학력	초졸 이하	0.1034	0.1892	0.0125	0.1970	-0.0198
(준거: 고졸 이상)	중졸	-0.0249	0.1502	-0.0971	0.1565	-0.1312
직업 (준거: 무직)	단순노무					
	종사자 외	-0.1069	0.1657	-0.0197	0.1719	-0.0181
	직업					
	단순노무	-0.2194	0.1629	-0.1725	0.1690	-0.1639
	종사자					
형기			0.0835	0.0558	0.0692	0.0565
범수			0.6420	0.0879	0.6018***	0.0911
징벌 횟수			0.0520***	0.0522	0.00207	0.0548
출소 후 재범환경					0.0565	0.1092
공권력에 대한 태도					0.2822**	0.1047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0.0414	0.1061
-2 Log L	1235.007		1156.698		1133.227	
AUC	0.5368		0.6532		0.6617	
Max-rescaled R ²	0.0062		0.0933		0.1070	

†p<.10, *p<.05, **p<.01, ***p<.001

4. 생존분석 결과

가) Kaplan-Meier 생존분석

단계적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활교육 경험 여부 및 재활교육 이수시간과 재범 여부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약류의 특성상 회복과

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경험하게 되므로(최경찬·이지연, 2023), 미국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청(SAMHSA, 2012)은 회복을 “개인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의 출소 후 재범까지 걸린 시간의 증가도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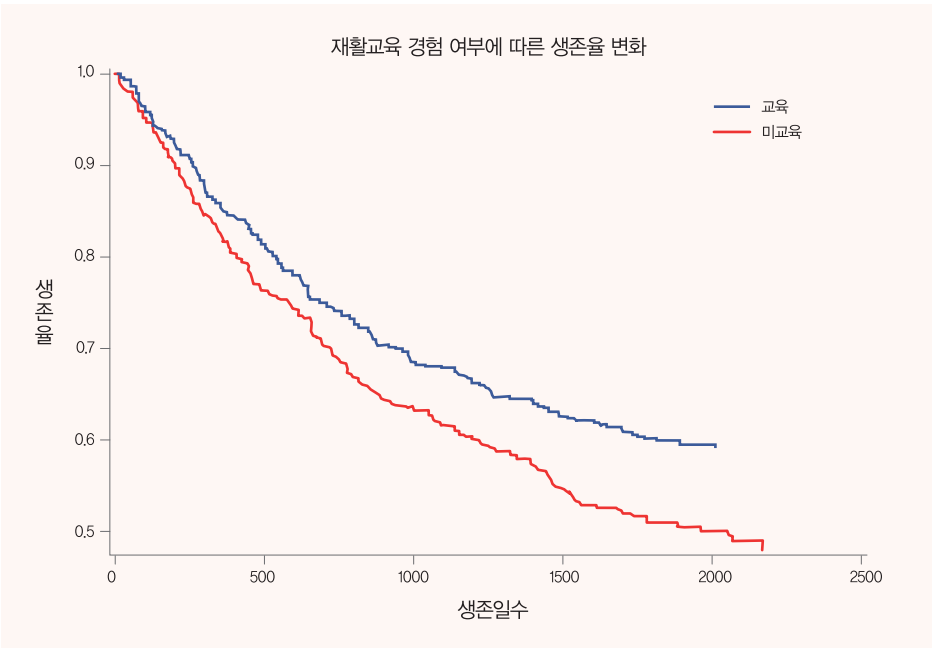
따라서, 우선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재활교육 여부에 따른 생존을 차이를 분석하고, 이후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다른 주요 통제변수들까지 고려해, 재활교육 경험 여부 및 재활교육 이수시간과 마약류사범의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생존분석에 있어 사건(Event)은 ‘재범’, 시간(Time)은 ‘출소 후 재범까지 경과 기간’, 중도절단(Censored)은 ‘재범 사건으로 코딩되지 못하는 관측기간 종료 시까지의 미재범 사례’를 의미하며, Kaplan-Meier 분석 결과는 〈표 5〉 및 〈그림 4〉와 같다.

교육집단의 데이터 수는 439, 사건 수(재범)는 178, 중도절단(미재범) 수는 261로 나타나, 교육집단의 59.45%가 재범 없이 연구 기간을 마쳤다. 반면, 미교육집단의 데이터 수는 492, 사건 수(재범)는 247, 중도절단(미재범) 수는 245로 나타나, 미교육집단의 49.80%가 재범 없이 연구 기간을 마쳤다. Log-Rank Test 결과 ‘두 집단 간 생존 곡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며(p<.01), Wilcoxon Test 결과, ‘두 집단의 생존시간 중앙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도 기각하였다(p<.01).

〈표 5〉 재활교육 경험 여부별 재범까지 Kaplan-Meier 생존분석

구분	전체 N	이벤트 수	중도절단 N	중도절단 %
교육	439	178	261	59.45
미교육	492	247	245	49.80
전체	931	425	506	54.35
Log-Rank	X2=8.0237, df=1, p=0.0046			
Wilcoxon	X2=6.7082, df=1, p=0.0096			

〈그림 4〉 재활교육 경험 여부별 재범까지 Kaplan-Meier 생존분석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재활교육 참여 및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특히, 앞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범수, 공권력에 대한 태도 등은 재범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른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때도 위와 동일한 패턴이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나) Cox 비례위험분석

우선 ‘재활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재활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 것이다’라는 가설 2-1 검정을 위해, 앞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변수들을 단계별로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생존시간은 선형성 증가, 데이터의 분포 정규화, 모형 적합성 향상을 위해 로그 변환하여 반영하였다(Clark et al., 2003).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3의 결과를 보면 주요 독립변수인 ‘재활교육 경험’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0.2167, 위험비는 0.805(p<.05)로 나타나 재활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재범위험이 재활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약 19.5%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재활교육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 출소 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수감기반 약물치료프로그램이 재범률을 감소시키며, 평균적으로 치료집단이 비교집단보다 1.34배 더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가진다는 Mitchell et al.(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6〉 가설 2-1 Cox 비례위험모형 검정 결과(종속변수: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SE	β	SE	β	SE
재활교육 경험 (미교육(준거): 0, 교육: 1)		-0.2730**	0.1004	-0.1932 [†]	0.1020	-0.2167*	0.1025
연령		-0.0068	0.0059	-0.0121*	0.0062	-0.0148*	0.0062
성별(남성(준거): 0, 여성: 1)		-0.1338	0.1960	-0.0419	0.1974	0.0566	0.2011
학력	초졸 이하	0.0453	0.1377	0.0012	0.1386	-0.0366	0.1394
	(준거: 고졸 이상) 중졸	-0.0102	0.1113	-0.0426	0.1120	-0.0659	0.1124
직업 (준거: 무직)	단순노무	-0.1082	0.1202	-0.0741	0.1203	-0.0755	0.1203
	종사자 외 직업						
	단순노무종사자	-0.1630	0.1191	-0.1503	0.1197	-0.1458	0.1200
형기				0.0875*	0.0387	0.0859*	0.0388
범수				0.4626***	0.0638	0.4266***	0.0648
징벌 횟수				0.0316	0.0337	0.0130	0.0346
출소 후 재범환경 (보통 이상(준거): 0, 불량 이하: 1)						0.1029	0.1340
공권력에 대한 태도 (보통 이상(준거): 0, 불량 이하: 1)						0.4346*	0.1782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보통 이상(준거): 0, 불량 이하: 1)						0.2565	0.1852
-2 Log L		5554.734		5494.066		5482.594	
Likelihood Ratio Chi2(df)		11.5774(7)		72.2455(10)		83.7172(13)	
Prob>Chi²		0.1153		<.0001		<.0001	
N		931		931		931	

[†]p<.10, *p<.05, **p<.01, ***p<.001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연령’의 회귀계수 추정치 -0.015, 위험비 0.985($p<.05$)로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재범위험이 약 1.5%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범수’ ($\beta=0.427$, 위험비=1.532, $p<.001$)와 ‘공권력에 대한 태도’($\beta=0.435$, 위험비=1.544, $p<.05$)는 재범의 위험을 증가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와 같은 패턴의 결과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형기’의 회귀계수 값은 0.086, 위험비는 1.090($p<.05$)로 형기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재범위험이 약 9%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형기가 죄질을 반영함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을수록 재범위험이 증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성별’, ‘학력’, ‘직업’, ‘징벌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의 재범위험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2-2 검정을 위한 Cox 비례위험모형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재활교육 이수시간’과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설 1-2 검정결과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의 재활교육 이수시간이 대부분 비슷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선 <표 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beta=-0.015$, 위험비=0.985, $p<.05$), ‘형기’($\beta=0.081$, 위험비=1.084, $p<.05$), ‘범수’($\beta=0.447$, 위험비=1.563, $p<.001$), ‘공권력에 대한 태도’($\beta=0.423$, 위험비=1.526, $p<.05$)은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력’, ‘직업’, ‘징벌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과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가설 2-2 Cox 비례위험모형 검정 결과(종속변수: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SE	β	SE	β	SE
재활교육 이수시간		0.0020	0.0020	-0.0001	0.0019	-0.0004	0.0019
연령		-0.0079	0.0059	-0.0125*	0.0062	-0.0149*	0.0063
성별(남성(준거): 0, 여성: 1)		-0.0234	0.1935	0.0221	0.1946	0.1287	0.1984
학력	초졸 이하	0.0679	0.1380	0.0025	0.1390	-0.0354	0.1399
	(준거: 고졸 이상) 중졸	0.0072	0.1114	-0.0401	0.1122	-0.0630	0.1125
직업	단순노무	-0.1093	0.1201	-0.0705	0.1203	-0.0742	0.1204
	종사자 외 직업						
	(준거: 무직) 단순노무종사자	-0.1886	0.1191	-0.1573	0.1198	-0.1545	0.1201
형기				0.0811*	0.0389	0.0805*	0.0390

범수		0.4788***	0.0637	0.4468***	0.0646
징벌 횟수		0.0378	0.0335	0.0204	0.0343
출소 후 재범환경 (보통 이상(준거): 0, 불량 이하: 1)				0.0800	0.1336
공권력에 대한 태도 (보통 이상(준거): 0, 불량 이하: 1)				0.4227*	0.1782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보통 이상(준거): 0, 불량 이하: 1)				0.2564	0.1852
-2 Log L	5561.302	5497.667	5487.047		
Likelihood Ratio Chi2(df)	5.0092(7)	68.6447(10)	79.2645(13)		
Prob>Chi²	0.6588	<.0001	<.0001		
N	931	931	931		

† $p<.10$, * $p<.05$, ** $p<.01$, *** $p<.001$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교육과 재범 간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재활교육이 출소 후 마약류사범의 재범 여부 및 재범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년과 2019년에 출소한 65세 이하 한국인 마약류사범 931명의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의 재범가능성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제한적인 유의수준에서 낮았으며,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의 재범위험비는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마약류사범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형기, 범수, 징벌 횟수뿐만 아니라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등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출된 결과로서 진실험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석 결과의 내적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는 점과, 단순히 재활 교육과 재범여부 간의 관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일회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회복과 재활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과의 관계까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이다. 분석 결과 마약류사범이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일정 기간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다가 결국에는 단약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재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장되는 패턴을 보여 재활교육이 치유와 회복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타 통제변수 중에서는 다양한 생애주기 범죄학(life-course criminology) 이론과 그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연령의 증가가 재범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높은 형기와 범수는 개인의 범죄성향(criminal propensity)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표로서 실제로 재범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범죄자 자신이 겪는 내적인 변화도 범죄경력 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최근의 주장(예: Na et al., 2015; Na & Jang, 2019; Paternoster & Bushway, 2009)과 일치하게,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재범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마약류사범의 내적 상태나 변화도 재범의 감소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반면, 성별, 학력, 직업, 징벌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과 재범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학력, 직업과 재범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마약류 투약 범죄가 중독성에 기인한다는 특성상 성별,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크게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징벌 횟수와 재범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정시설 규율 위반으로 부과되는 징벌이 주로 수용자 간 다툼과 폭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 횟수가 중독문제를 재범 원인으로 하는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출소 후 전반적인 재범환경 및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과 마약류사범의 재범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는 마약류사범이 일반 범죄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들은 무작위 대조군을 포함한 진실험 설계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추정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즉, 연구

모형에 반영되지 못한 미교육집단과 교육집단 간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관측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활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범죄를 중단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재활교육 미참여자보다 높은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활교육을 받지 않고 출소한 마약류 투약사범의 미교육 사유가 ‘교육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예: 형 확정 후 형기 종료 전까지의 남은 기간이 짧아 교육 참여가 시간상 불가능함)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재활교육 참여를 희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020년부터는 재활교육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는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마약류사범들의 내적 성향이나 내적 변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24년부터는 단약자기효능감, 우울 정도, 변화단계 등 마약류 투약사범의 심리적 상태를 재활교육 전후로 평가하고 있어 해당 변수들을 반영하게 되면 보다 정교하게 재활교육의 순효과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였던 범죄경력 단절을 설명하는 다른 주요 통제변수들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모형 설명력과 예측력이 낮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약물 문제로 인한 도움 요청, 결혼, 사회적 관계, 합법적 또는 불법적 수입(Na et al., 2015), 충동 제어, 공격성 억제, 미래 지향, 도덕적 이탈, 법적 냉소주의, 성공 동기, 또래 비행, 부적절한 동료 압력(Jang & Na, 2019) 등 범죄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분석모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재활교육 이수시간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 그쳐서 재활교육 이수시간에 관한 보다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 기준 법무부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2018~2019년에 비해 재활교육 이수시간이 확대되어 40시간, 80시간, 120시간, 1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수명령 병과에 따라 각 재활교육 과정별 이수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최신자료와 충분한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재활교육 이수시간의 실질적인 차이에 따라 재범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향정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마약사범’과 ‘대마사범’을 포함하지 않았다. 여성 마약류사범의 표본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20/30대 표본의 비중도 작았다. 여성 마약류사범은 2020년 4,557명에서 2023년 8,910명으로, 20/30대 마약류사범은 2020년 9,009명에서 2023년 15,051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대검찰청, 2024) 최근 마약류사범의 성별·연령별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재범을 공식통계로만 파악하여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미적발, 미검거 재범이 존 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재활교육과 재범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외부 환경적 요인과 범죄자의 친사회적 내적 변화와 관련된 공권력에 대한 태도 등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재활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활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범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는, 마약류 범죄 대응에 있어 단순히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치료·재활을 포함한 사회통합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마약류사범의 범죄 경력 중단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대검찰청. (2024).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법무부. (2023). 2023 교정통계연보.
_____. (2024). 2024 교정통계연보.
양형위원회. (2024). 2024년 양형기준.
윤정숙, 성유리, & 이태현. (2021).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66.
Kuhar, M. (2014). 중독에 빠진 뇌. (김정훈, 역). 해나무.

■ 국내논문

박종주. (2018).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의 12 단계 프로그램에 스며있는 고해성사의 영상. 신학전망, (202), 128-169.
오윤이, 나종민. (2023).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공무집행방해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4(1), 203-236.
윤혜진. (2016). 집중명상(Samatha) 프로그램이 마약중독자의 갈망, 자아존중감 및 단약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불교학보, 75, 285-313.
유숙경, 이경원.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사용자 회복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혼합연구방법론 접근. 교정연구, 30(2), 31-68.
조종현, 손정락. (2013).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 프로그램이 마약류 중독자의 우울, 충동성 및 단약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3-31.
최경찬, 이지연. (2023). 마약류 중독자의 바닥경험 강도에 따른 변화단계 차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류 사범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9(1), 283-300.
한부식, 황인옥. (2017).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부산지역 NA 모임을 중심으로: 서울·부산지역 NA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1), 91-116.

■ 외국논문

Bradburn, M. J., Clark, T. G., Love, S. B., & Altman, D. G. (2003). Survival analysis Part II: Multivariate data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methods. British Journal of Cancer, 89(3), 431-436.
Clark, T. G., Bradburn, M. J., Love, S. B., & Altman, D. G. (2003). Survival analysis part I: basic concepts and first analyses. British Journal of Cancer, 89(2), 232-238.
Clark, T. G., Bradburn, M. J., Love, S. B., & Altman, D. G. (2003). Survival analysis part IV: further concepts and methods in surviv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Cancer, 89(5), 781-786.
De Leon, G. (2010). Is the therapeutic community an evidence-based treatment? What the evidence says. Therapeutic Communities, 31(2), 104.
Doleac, J. L., Temple, C., Pritchard, D., & Roberts, A. (2020). Which prisoner reentry programs work? Replicating and extending analyses of three RCT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2,

105902.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ottfredson, D. C., Najaka, S. S., & Kearley, B. (2003). Effectiveness of drug treatment courts: Evidence from a randomized trial. *Criminology & Public Policy*, 2(2), 171-196.

Jang, S. J., & Na, C. (2019). Within-individual effects of strain on crime/drug use and conditioning effects of criminal coping propensity: Random-effects model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3, 25-40.

Kuhar, M. J., Ritz, M. C., & Boja, J. W. (1991). The dopamine hypothesis of the reinforcing properties of cocaine. *Trends in Neurosciences*, 14(7), 299-302.

Laub, J. H., & Sampson, R. J. (2001). Understanding desistance from crime. *Crime and Justice*, 28, 1-69.

Leon, G. D. (1995). Therapeutic communities for addictions: A theore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12), 1603-1645.

McHugh, R. K., Hearon, B. A., & Otto, M. W. (2010).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substance use disorders. *Psychiatric Clinics*, 33(3), 511-525.

Miller, W. R., & Rollnick, S. (2013). *Motivational interviewing: Helping people change* (3rd ed.). Guilford Press.

Mitchell, O., Wilson, D. B., & MacKenzie, D. L. (2012). The effectiveness of incarceration-based drug treatment on criminal behavior: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8(1), i-76.

Na, C., Paternoster, R., & Bachman, R. (2015). Within-individual change in arrests in a sample of serious offenders: The role of identity.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1, 385-410.

Na, C., & Jang, S. J. (2019). Positive Expected Selves and Desistance among Serious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5(3), 310-333.

Paternoster, R., & Bushway, S. (2009). Desistance and the feared self: toward an identity theory of desista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9, 1103-1156.

Piquero, A. R., Farrington, D. P., & Blumstein, A. (2003). The criminal career paradigm. *Crime and Justice*, 30, 359-506.

Prochaska, J. O., DiClemente, C. C., & Norcross, J. C. (1992). In search of the structure of change. In Y. Klar, J. D. Fisher, J. M. Chinsky, & A. Nadler (Eds.), *Self change* (pp. 87-114). New York, NY: Springer.

Rossman, S. B., Roman, J. K., Zweig, J. M., Rempel, M., & Lindquist, C. H. (2011). The multi-site adult drug court evaluation: The impact of drug courts.

Timko, C., & DeBenedetti, A. (2007).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intensive referral to 12-step self-help groups: One-year outcom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0(2-3), 270-279.

Vanderplasschen, W., Colpaert, K., Autrique, M., Rapp, R. C., Pearce, S., Broekaert, E., & Vandeveld, S. (2013). Therapeutic communities for addictions: A review of their effectiveness from a recovery-oriented perspective.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3.

Welsh, W. N., Zajac, G., & Bucklen, K. B. (2014). For whom does prison-based drug treatment work? Results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0, 151-177.

■ 웹사이트

마약퇴치운동본부. (2018).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Retrieved January 27, 2025, from <https://www.drugfree.or.kr/webzine/magazine/3/post-35.html>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n.d). 중독바로알기 예방정보마당 약물 종류 및 증상. Retrieved January 27, 2025, from <https://bgnmh.go.kr/board.es?mid=a30101020000&bid=0022>

연합뉴스. (2012). 법무부, 예측력이 뛰어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 개발. Retrieved March 21, 2025, from <https://www.yna.co.kr/view/RPR20120229032000353>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18). Principles of drug addiction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 (Third edition). Retrieved January 27, 2025, from <https://archives.nida.nih.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ddiction-treatment-research-based-guide-third-edition>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2). SAMHSA's working definition of recovery: 10 guiding principl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trieved January 27, 2025, from <https://store.samhsa.gov/sites/default/files/pep12-recdef.pdf>

‘엄벌주의’는 없다?: —— 엄벌성과 형벌 포폴리즘의 이론적 맥락



이현영
경기대학교 교정심리학전공 교수

목차

- I. 도입
- II. “엄벌주의”, 그리고 Punitiveness”
- III.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IV. 왜 그런가?
-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modern penal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벌성(New-right penal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폴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 엄벌주의, 엄벌성, 형벌 포폴리즘, 형벌성,
형벌의 역사/사회학



1. 도입

한국의 형벌이 점점 엄벌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형사정책연구”, “법과 사회”를 비롯해 “한국해법학회지”, “역사학연구”까지 다양한 학회지에 “엄벌주의”를 다룬 많은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엄벌주의” 동향은 형법 개정이 이뤄진 2010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강화,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한국에서 “엄벌주의”라는 단어는 학술 용어으로써 영어 “punitiveness”보다 더욱 탄력적, 실용적 의미로 사용된다. 해외에서 “punitiveness” 혹은 “new punitiveness”라는 용어/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어권 국가들을 포함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는 ‘역사적’ 단어다(Pratt et al., 2005).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modern penal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 새롭게 등장한 혹은 과거로 회귀한 -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Radznowics, 1991; Simon, 1995; Garland, 1996; O'Malley, 1999; Pratt, 2000a). 이러한 엄벌성은 공식적 형벌로 제도화되거나 혹은 사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¹⁾ 전자는 특히 그 조건과 과정에 초점을 둔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사적 정의 혹은 대중 정의(private justice or popular justice)라는 이론 틀로 설명된다.

흥미롭게도, 해외 범죄학계에서 엄벌성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지표로 사용되는 구금률과 교도소 상태(prison conditions)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국 형벌을 엄벌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분명, 국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형벌 포퓰리즘 메커니즘의 일부로 설명 가능한 엄벌적 입법이 있어 왔음에도(추지현, 2014, 2017; Lee, 2020), 위 대표적 지표로 보면 한국의 형벌 전개를 엄벌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먼저, 구금률을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국 구금률은 대략 100에서 110 내외로 볼 수 있다. 700에 이르는 예외적으로 높은 미국의 구금률은 비교에서 제외하더라도, 보통 엄벌적 국가들의 구금률은 최소 150에서 200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다(예, 뉴질랜드 190). 반대로, ‘포용적’ 형벌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50과 80 사이에서 증감을 보인다.²⁾ 즉, 한국의 구금률은 ‘엄벌적’이라 불릴 만큼 높지 않다.

1) 엄벌성이 사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형태가 자경주의(vigilantism)다. 예를 들면, 형기 만료 후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지역에 살기를 원치 않는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가 해당 지역 내에 집을 얻지 못하도록, 거주 반대시위를 포함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2) World Prison Brief - <https://www.prisonstudies.org/world-prison-brief-data>

또 다른 지표인 교도소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국의 엄벌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민영교도소, 모범수형자 처우,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심리 치료 프로그램, 코로나 이후 교정 처우 등 다양한, 구체적 주제에 관한 시의성을 가진 중요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³⁾ 최근 한국의 교도소 상태에 집중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진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도소 상태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한인섭, 2006), 교도소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구체적 지표들을 활용하고,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구금 상태를 풍부하게 설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교도소 상태를 기준으로 엄벌성을 논하는 것은 당장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엄벌주의”가 작동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가? 어쩌면 해외에서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과 용어가 국내에서 의도치 않게, 부주의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강조하지만, 이는 참조의 틀로써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의 유용성, 적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이론들을 활용해 현재 한국의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⁴⁾ 다만, 이 경우, 해당 이론들이 어떤 사회적, 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그 핵심 기제, 특징은 무엇인지, 그 이론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실히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두터운 이해는 한국 형벌의 현실을 다시 성찰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면밀히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로 연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벌성(New-right penal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

4) 특히, 큰 틀에서 유사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유사한 사회적 맥락과 조건을 공유한다면, 그 이론은 유용성을 가질 것이다. 물론, 지역적 차이, 미시적 변수들의 영향, 상호작용에 의해 해당 이론의 적실성에 차이가 있다(Giddens, 1976).

II. “엄벌주의”, 그리고 “Punitiveness”

한국에서 “엄벌주의”라는 말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2023년 한국 범죄연구의 중추 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형벌 포퓰리즘”과 “엄벌주의”가 핵심 내용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현재 학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한다.⁵⁾ 언론을 보면, TV나 라디오를 제외하고, “엄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신문기사의 수가 2024년 상반기에만 2508건에 이른다.⁶⁾ 언론의 과급력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이 단어가 한국 일반 시민들에게도 낯설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인 “엄벌주의”는 영어 “punitiveness”가 해외 학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즉, 이 둘은 일견 동일한 혹은 상응하는 단어로 이해되지만,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엄벌주의”는 학계든 언론이든 대체로 “강한 처벌에 대한 믿음, 지향, 태도, 의지” 등을 담는 단어로 사용되는 반면, 영어 “punitiveness”는 의도나 의지-중립적 의미 역시 함께 담는 단어이며, 특히 이론으로써는 더욱 구체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punitiveness”는 한국어 “엄벌주의”로 사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용적(pragmatic) 측면에서 번역이 필요하다면, “punitiveness”는 “엄벌성”에 가깝다.⁷⁾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영어 접미사인 “~ness”는 어떤 대상의 “특성/상태나 조건”을 기술한다.⁸⁾ 즉, “~ness”는 의도성, 의지를 함축하기보다는 중립적, 기술적이다. 정리하자면, “punitiveness”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의도나 의지로 추동된 강력한 처벌 동향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의도-중립적, 자연 발생적, 혹은 외적 조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그리고 처벌의 현재의 성질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Punitiveness(이하, “엄벌성”)” 이론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302000000&bid=0010&act=view&list_no=13649

6) 빅카인즈(BIG KINDS) -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Bigkinds=EF9A837E25D7C1ED651F1388B5F824DA>

7) 사실 “엄벌”이라는 단어도 “punitive”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에서 “엄벌”이라는 단어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과도하고 침해적인” 내포(connotation)를 담는 “punitive”는 실용적 측면에서 “엄벌”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8) Oxford English Dictionary -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ness>

III.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논자에 따라 설명의 초점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엄벌성 이론가들의 공통된 주장은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는 단순히 기존의 것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대 형벌성에서 벗어난, 비일관적, 모순적 형벌 동향들이 산발적으로 등장,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Radznowics, 1991; Simon, 1995; Garland, 1995, 1996; O'Malley, 1999; Pratt et al., 2005).

1. O'Malley

O'Malley(1999)는 1970년대 이후의 형벌성을 “휘발적이며 모순적(volatile and contradictory)”이라 칭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은 대립적, 모순적 동향과 특징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 훈육적 복종 VS 자기경영의 자율성
- 무능력화 및 대량구금 VS 교정교화
- 처벌과 낙인 VS 재통합
- 공식적 범죄화 VS 비공식적 가해자-피해자 조정

그의 문제의식은 이런 비일관적 형벌 레짐과 동향이 다양한 사법권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 심지어 일부 사법권에서는 상기한 모든 동향이 특히 강력한 처벌을 중심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벌 전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O'Malley, 1992, 1999). 그가 파악한 현대 형벌성을 구성하는 특징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훈육(Discipline)⁹⁾

엄격한 위계적, 권위적 훈육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은

9) 이 맥락에서 “Discipline”은 한국어로 “규율”이 아닌 “훈육”으로 사용한다. “규율”은 Foucault의 후기 권력 이론, 즉 생명 권력 및 통치성과 같은 권력의 성질을 설명하는 “regulation” 혹은 “regulatory power”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



사회에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특히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며, 매우 구체적 목적을 가진다 - “소년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사회 통제, 자기 규율, 권위 존중, 그리고 노동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Carr and Ecker, 1996: 16; O'Malley, 1999 재인용).” 일부 극단적 프로그램들은 철저한 일상 관리 및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 육체노동, 군사 훈련소 기초 교육 및 강도 높은 군대 훈련까지 포함한다. 이는 Foucault의 “감시와 처벌(1978)”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즉 처벌을 수단으로 복종의 주입을 목표로 하는 방식의 형벌 레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벌(Punishment)¹⁰⁾

범죄자를 처벌하기만 하는 것은 형벌 복지주의 혹은 교정주의 레짐 하에서 오랜 시간 형사사법의 진보에 대한 장애로 인식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억제, 옹호, 혹은 당위적 공과론의 어떤 목적이든, 처벌은 현대 형벌성의 지배적 위치로 복귀했다(Garland, 1985).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 레짐은 종종 다음과 같이 정당화된다: 복지와 교정교화 모델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느낀다고 추정

10) 여기의 “punishment”는 일반적 의미의 “형벌 혹은 처벌”이라기보다는, 형벌 복지주의 시대의 특징인 ‘처벌과 복지/교정교화의 결합’에서 ‘복지/교정교화’적 요소들이 제거된 점을 강조한다.

되는 처벌의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지역 사회에도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화 담론은 교정교화, 특히 ‘복지’ 제재는 범죄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준법 시민들도 갖지 못하는 기술 습득의 기회를 준다는 점;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혹은 ‘양형 진실(truth-in-sentencing)’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반영한다는 것이다(Brown, 1990; O'Malley, 1999 재인용).

주체화(Enterprise)¹¹⁾

“훈육” 및 “처벌” 레짐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에 포착되는 주요한 하나의 동향은 ‘주체적 수용자’ 만들기를 특징으로 한다(Pratt, 1996; Garland, 1997).

이러한 동향, 프로그램 하에 수용자들은 ‘억압’ 당하는 것이 아닌, 자기계발, 스스로의 교정교화의 주체로 ‘영입’된다. 그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구금 생활의 전반적인 관리(government)¹²⁾에 참여한다(Garland, 1997; O'Malley, 1999 재인용).

즉, 수용자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할 기회가 부여된 존재로 구성된다. 동조나 복종과 같은 자기부정보다는, 스스로 변화, 경영하는 자성예언적 주체로 만들고자 한다. 이점에서 부트캠프 모델의 기저에 있는 가정인 “훈육”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또한, 앞서 언급한 “처벌” 중심의 제재들이 자기 주도적 교정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점과도 차이가 있다.

무능력화

감시라는 권력의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자들을 밀접하게 사회 내에서 감독, 지도하는 지역사회 교정과 소위 ‘대량구금’은 현대 형사사법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Cohen, 1985). 무능력화는 상기한 다른 동향들과 표면적으로 유사점을 갖기도 하지만, 무능력화의 논리적 기반은, 그 자체로, 처벌도 교정교화도 아니다. 무능력화 레짐 하에서 형기의 결정은 보험계리적이다. 즉 ‘삼진아웃법’과 같이, 범죄자의 위험을 ‘판단, 예측’하는 정보를 활용하며, 전적으로 범죄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11) 이 “주체화”라는 용어는 Foucault의 “주체성(subjectivity)”, 즉 완벽하게 자유로운 주체가 아닌,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타율적’ 주체성 혹은 ‘대상화된’ 주체성으로 이해한다.

12) 여기의 “government”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부”의 의미가 아닌, Foucault의 통치성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governing을 의미한다.

한다(Feeley & Simon, 1994). 여느 ‘처벌’ 중심의 제재들과 같이, 무능력화는 ‘nothing works’, 즉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고비용의 ‘실패’라는 인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당화된다(Cohen, 1985). 또한, “시민들은 응당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확보하게 두는 것보다는 그들을 통째로 가두는 것이 저렴하다”는 수사에 의해 뒷받침된다(Zedlewski, 1985; O'Malley, 1999 재인용).

배상

국가 및 공동체의 ‘도덕’에 의해 추동된 응보의 복귀가 한 축에 있다면, 범죄와 국가 사이를 단절시키는 동향들 역시 현대 형벌성의 일부를 구성한다. 예컨대, 최근 호주와 영국에서는 법원이 벌금형보다는 되도록 배상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집합적 도덕성에 의해 발휘되는 응보를 대신해, 그리고 국가를 상징적 피해자로 형사사법의 중심에 위치시키던 과정을 대신해, 개별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사적으로 배상/보상에 협의하는 과정이 자리한다. 사적 중재 및 화해의 가치에 주목하는 관점도 있지만, 가해자 행위의 공적(public) 측면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관점도 동시에 존재한다(Miers, 1990; O'Malley, 1999 재인용).

재통합

배제와 낙인이라는 광장의 축제 같은 공개적 정의를 대신해서, 사적 절차를 통해 개인들을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재통합적 제재들이 등장했다(Braithwaite, 1993; O'Malley, 1999 재인용). Braithwaite(1989)에 따르면, 이는 기존 대부분의 제재와 차별화를 추구한다. 응보에 필수적인 ‘반-생산적’ 낙인, 무능력화의 ‘허무함’, 그리고 형벌복지 레짐 하의 교정교화의 ‘실패’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상술한 배상과 종종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재통합과 배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배상은 ‘사적’인, 즉 개인적 수준의 정의라는 형태로 피해자에 초점이 있고, 이는 분명히 피해를 보상하는 혹은 회복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이 과정에 개인을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O'Malley, 1999).¹³⁾

13) 배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회복적 사법의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는 Nils Christi의 “Conflicts as property(1977)”를 둘러싼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2. Pratt

비일관성, 모순성에 주목한 O'Malley와 달리, Pratt은 현대 형벌성은 기존 ‘근대적’ 형벌성의 지속과 동시에, 이와는 다른 성질의 엄벌성이 새롭게 등장,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새로운 엄벌성은 특히 그 감정적, 문화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Pratt, 2000b).

요컨대, 이 시대의 엄벌성, 즉 감정적 형벌성은 근대적, 합리적 형벌성과 대비되지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긍정적/포용적으로도, 또 부정적/배제적으로도 표상된다. 그 중, 특히 그 부정적 동력이 지배적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Pratt은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먼저, 이 시대의 엄벌성과 근대 형벌성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 근대적 형벌성과 ‘근대적이지 않은(non-modern)’¹⁴⁾ 형벌성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구분한다(Pratt, 2000a):

- 구금형 중심의 훈육과 규범화(normalization) VS 신체형 중심
- 관료제적 전문성에 의해 형성, 집행되는 형벌 VS 형벌의 부과, 집행에 공동체의 참여

14) ‘전근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대적이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Simon(1995)은 저 특징들은 ‘전근대적’으로 보지 않고, ‘탈근대적 형벌성(postmodern penalty)’의 일부로 설명한다.

-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집행하는 형벌 VS 공개적 장소에서 집행하는, 상징적, 소통 행위로서의 형벌
- 합리성, 확실성, 비례성을 추구하는 형벌 VS 자의적이고 과도한 형벌

보다 구체적으로, Pratt(2002)은 방대한 역사 자료를 분석하여, 1800년대 전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형벌성이 소위 ‘문명화(civilized)’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를 1970년대 이후의 형벌성과 비교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1800년대 전반부터 1970년대(Pratt, 2002)¹⁵⁾

- 대중들의 눈에서 사라진 교도소: 교도소의 지리적 위치 이동
- 구금 상태 개선: 물적 조건을 포함한 교도소 내부 레짐 변화
- 형벌 언어 개선(sanitization): 형벌, 특히 범죄자/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변화
- 형벌의 관료화: 일반 공동체의 참여/영향이 제외된, 국가 중심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 형벌

(2) 1970년대 이후의 형벌성

Pratt(2000c)은 이 시기에도 근대 형벌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 기술관료적 합리성 바탕의 형벌성; 치료적 교정교화보다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일탈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데 중점을 둔 관리주의; 양형과 가석방에 ‘위험’을 계산하는 접근 등(Feeley & Simon, 1992). 그럼에도, 그는 이보다 도드라지는 새로운 방식의 감정적 형벌 전개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감정적 형벌성은 용서와 화해 같은 긍정적/포용적 특징과 더불어 모욕을 주고 낙인을 찍는 부정적/배제적 특징 모두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표상들을 통해 긍정적/포용적 특징의 형벌성을 읽어낼 수 있다: 뉴질랜드 가족 화해 모델(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재통합적 수치심(Braithwaite, 1989); 이후,

15) 동일한 관점의 주요 연구로 Spierenberg(1984)를 참고할 수 있다.

보다 광역적인 회복적 사법 운동(Van Ness, 1996).¹⁶⁾ 반대로, 부정적/배제적 성격의 형벌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현 시대의 감정적 형벌의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즉 엄벌성의 핵심이다. Pratt은 이 엄벌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재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미국 남부의 교도소 노동과 체인 갱의 복귀(Crist, 1996)
- 의도적, 공개적으로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제재: 주로, 보호관찰과 지역사회 제재의 형태로, 도심의 공원, 공중화장실 등과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범죄자, 보호관찰, 혹은 지역사회 질서/명령” 등의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육체노동을 하는 모욕적인 제재(Brilliant, 1989; Garvey, 1998; Karp, 1998)
- 전과자들이 자신의 범죄성을 공중에 알려야 하는 제재: 자신의 집 마당에 표지판을 설치, 자신의 차에 “위험한 성범죄자 - 아동 접근 금지” 표시를 해야 하는 제재(Massaro, 1997; Karp, 1998)

나아가, 이런 제재들은 공식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로 자경단 형태의 더욱 노골적인 사적 제재로 연결되기도 한다. 즉, 범죄자로 알려진 혹은 심지어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비공식적 처벌 행위로도 연결된다. 예컨대,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거주지 공개의 결과로, 분노에 찬 대중들이 그들의 집주소로 찾아가 시위한다(Griling et al., 1998).

엄벌성은 비단 구체적 형벌 제재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범죄 문제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급증과 학문적 담론의 증가; 높은 수준의 구금률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톨레랑스 혹은 정상화(normalization); 재범률(교정교화)을 포기하고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처벌에 대한 관심; 더욱 강력한 처벌 지향의 제재를 신속히 받아들일 준비; 시민들 자신이 형벌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지(Pratt, 2000b, 2007).

16) Pratt(2000b, 2000c)은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뉴질랜드 가족 화해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오해를 지적하고, 이 둘은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이후 회복적 사법 운동의 동력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나, 회복적 사법은 Durkheim에서 Christ로 연결되는 생각을 그 이론적 기원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1970년대 이후의 엄벌성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형벌의 형성에 대중의 참여/영향; 즉, 통제된 합리성을 대가로 감정적 표출이 우선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 엄벌성의 구성 요소들은 근대적 형벌의 프레임과 그 기저의 가정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이동을 포착 가능케 한다. 즉, 현재의 엄벌성은 근대적 조건에서 형성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성질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는 또 다른 시대의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됐기에 가능한 것은 아닌지 깊은 탐구와 성찰이 필요하다(Pratt, 2000a, 2000c).¹⁷⁾

3. 기타

O'Malley와 Pratt 외에도, 1970년대 이후의 형벌성, 특히 그 엄벌적 성질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현대 형벌성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는데 보완이 될 것이다.

(1) Sir Leon Radznowics의 “형벌의 퇴행(1991)”

이 논문에서 Radznowics는 다양한 사회에서 형벌이 사회적 자유로움보다는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특징을 열거한다. 아래 내용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생산한 ‘사회’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반대로, 범죄자를 반-사회적 개인, 법을 어긴 역겨운 존재, 파괴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 따라서, 형벌 정책은 사회 정책과는 분리된, 본질적으로 엄벌적이라는 인식
- 응보, 위협, 제재를 형벌의 지배적 기능으로 간주; 교정교화 기능을 제약
- 수형자 인권 보호에 관한 불관용적 태도
- 단속/법집행부터 양형과 처벌 과정까지 가혹하고 경직된 형사사법제도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균형성 약화

17) Pratt은 탈근대적 사회적 조건과 형벌성이 형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만, 단순히 이를 탈근대 시대의 도래 혹은 전근대로의 회귀로 단정하지 않는 유보적 입장이다.

- 증거 수집에 관한 엄격한 규칙,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 경시

(2) Jonathan Simon의 “탈근대 형벌성(1995)”

Simon(1995)은 구금률의 급증, 사형제, 통행금지법 등의 제재와 더불어, 특히 ‘충격 구금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부트캠프(Boot Camp)’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이는 탈근대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형벌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근대 형벌성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나, 탈근대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형벌 제재들이 지배적으로 형성, 확산된다고 한다.

부트캠프는 전형적으로 훈육 권력이 작동하는 규범화의 공간으로 근대의 산물이라는 Garland(1995)와 달리, Simon이 이를 근대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컨대, 그는 부트캠프가 “악의적 향수(wilful nostalgia)”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기능적으로는 무효하면서, 상징적, 상상적 의미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설명하자면, 부트캠프의 모태가 되는 군대 및 형벌 프로그램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시간(therapeutic time) (Rothman, 1978; Simon, 1995 재인용)”으로 일종의 “주기성(temporality)”을 가진다. 반면에, 현대의 부트캠프는 기껏해야 3~4개월의 짧은 프로그램으로, ‘생산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주며 낙인을 찍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규범화라는 기능적 효과는 갖지 못함에도, 빈곤 지역의 폭력적 하류계층 출신의 범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가 개선된다는, 특히 2차대전 이후의 번영과 풍요의 시기로 복귀한다는 중산층의 문화적 향수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빌린 것으로, 실제적 효과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제조된, 충만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인들, 고위 교정 관료들, 그리고 대중 일반에 두루 지지받는다(Morris 1993; Simon, 1995 재인용).

Simon에 따르면 급증하는 구금률과 가혹한 제재들, 특히 이 ‘비생산적’, 처벌-지향 프로그램인 부트캠프의 확산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근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탈근대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엄벌성의 구성 요소로, 탈근대 형벌성의 중심에 위치한다(Simon, 1995).

IV. 왜 그런가?

논자에 따라 설명의 초점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엄벌성 이론가들의 공통된 주장은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는 단순히 기존의 것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대 형벌성에서 벗어난, 비일관적, 모순적 형벌 동향들이 산발적으로 등장,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Radznowics, 1991; Simon, 1995; Garland, 1995, 1996; O'Malley, 1999; Pratt et al., 2005).

1. O'Malley의 “뉴라이트 형벌성(New-right penalty)”

(1) 신보수주의와 뉴라이트

현대 형벌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Foucault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70년대 이후의 범죄통제는 보수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틀로 범죄통제 전략을 기술, 설명한다. O'Malley는 이들이 ‘보수’적 범죄통제를 논하면서, 하나의 구체적 정치 합리성으로써 신보수주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나아가 그는 기존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의 틀로 이해했던 것들은 뉴라이트의 개념으로 더욱 분명히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뉴라이트는 두 개의 독립적인 - 경우에 따라 서로 갈등하는 - 이념 동향들로 구성된다: 신보수주의 사회권위주의 계열, 그리고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계열(Gamble, 1986, 1988; Levitas, 1986; Hayes, 1994). 현재 범죄학에서는 이 둘의 연합을 보통 신자유주의라 칭하지만, 실천적 수준에서 드러나는 비일관성으로 인해, 이를 단일한 정치 합리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O'Malley, 1999).

우선, O'Malley는 최근 범죄학계에서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더 큰 원인은 신보수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보수주의에서 규율은 사회적 선/올바름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개인주의와는 자연스레 섞이기 어렵다고 본다. 신보수주의자들에게 가족, 마을, 국가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다.

반대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 혹은 강화된 자율성이며, 개인들은 자기 이익 추구, 합리적 선택,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에게 국가란 - 특히, 나라의 질서 유지와 통치에 있어 - 정치 원칙이 특권화된 하나의 상징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은 자유로운 사회 계약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Scruton, 1984; O'Malley, 1999 재인용). 국가 주권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주장은 결국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이나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 신보수주의자로 알려진 Hayes(1994)에 따르면, 법은 계약과 범죄통제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나 개인의 도덕까지도 규율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반드시 강한, 궁극적 제재를 보유해야 하며, 응보적 처벌을 도구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O'Malley, 1999 재인용). 위 내용을 고려하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및 기업가 문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형벌 정책들의 이념적 기반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신보수주의는 19세기 부트캠프의 훈육, 맹목적 복종의 기술, 그리고 심지어 사형제도를 포함하는 응보적 처벌과 융화된다.

상기한 차이에도, 신보수주의는 자유시장 및 급진적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정치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그 연합의 핵심은, 이들 모두 복지주의를 적대한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에 있다. 설명하자면, 신보수주의는 일종의 사회진화론 혹은 사회적 다윈주의(Darwinism)를 믿는다. 이들 세계관에서는 마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과 같이 사회적 선택(social selection)이 중요하고, 그 ‘선택’의 필수 요소이자 기제는 불평등이다. 그런데 이 불평등은 복지와 같은 국가 개입을 통해 제거되는 경향이 있다(Levitas, 1986; O'Malley, 1999 재인용). 따라서, 이들에게 자유시장은 ‘선택’과 불평등이라는 신보수주의의 가치가 검증되고 이행되는 곳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우, 그 핵심은 시장과 개인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인데, 이는 사회 질서를 위한 최적의 테크놀로지로 여겨진다(Gamble, 1986). 특히, Milton Friedman, Hayek, 그리고 시카고 경제학파가 구상한 신자유주의는 법과 형벌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제도가 시장의 효용성과 합리성에 의해 최적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동일하게, 신자유주의는 기업가적 관점, 기법을 일반화시켜 다른 부문에 적용하고, 이는 종종 신관리주의 류의 담론들과 결합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세상의 진정한 창조자는 기업가들이며 그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들은 위험을 무릅쓰

는 대담함과 상상력이고, 기업가들 자신이 자원을 발견, 동원하고 그들의 비전과 힘으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Hayes, 1994; O'Malley, 1999 재인용).

앞서 언급했듯, 신자유주의도 복지주의 및 국가 개입에 의한 평균화 추구에 적대적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와는 달리,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는 쾌락은 신자유주의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의 의미와 지위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시장의 계약에 기초하고, 자유로운 관계는 자발적인 자기 이익 추구로 추동된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더욱 강조되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일부인 자유시장주의로 확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상호 이익을 위해 암묵적 계약을 통해 작동하는 수준으로만 수용된다. 즉, 신자유주의의 ‘공동체’는 신보수주의의 핵심에 있는 공동체적 옴/선택/가치 및 전통적 결속과는 다르며, 이는 유사한 가치나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연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O'Malley and Palmer, 1996; O'Malley, 1999).

이런 방식으로, 서로 상당히 다르면서도 중첩되는 두 줄기의 “뉴라이트” 정치 합리성이 “대처주의” 혹은 “레이건주의”와 같은 정치 담론, 구체적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등장한다. 범죄학적 분석의 목적에서, 위와 같은 정치적 관찰의 의미는 1980년쯤부터 형벌 정책은 서로 다른 통치 합리성들의 분절과 갈등이 아니라, 이들을 통합하는 레짐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 둘의 결합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특정한 가치와 가정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결정적 이유는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복지적 국가 개입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에서 ‘공동체’가 개인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면, 신보수주의에서 이는 개인을 초월하는 집합적 의식을 의미하며 개인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시장은 결코 온전한 축복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 윤리 및 자연선택에 있어 경제가 갖는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절제한 소비주의와 선택(choice)의 자유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Hayes, 1994; O'Malley 1999 재인용). 이런 차이가 필연적으로 그들 연합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집권했던 Thatcher 정부도 그런 긴장을 잘 관리했었고, Hayek와 같은 ‘유기적’ 지식인들 역시 그 두 합리성의 양극단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했다. Hayek(1988)의 경우, 자유시장 개인주의와 전통적 제도 및 가치의 필요성은 단순히 통합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 결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이 연합 레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통합된 양측 당사자들에게는 항상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내적 모순이다. 이는, 형벌성과 같이, 그 연합 사이의 긴장이 더욱 도드라진 지점에서 통치의 휘발성, 비일관성으로 포착된다.

(2) 뉴라이트 형벌성

O'Malley의 문제의식은 현대 엄벌성의 휘발적, 비일관적 특성이 설명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 신자유주의 형벌성은 그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환원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주체적’ 수용자 모델과 민간 배상 모델이 신자유주의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으나(예, Pratt(1996), Garland(1997)) 옹보적 처벌과 훈육적 복종 모델은 신보수주의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O'Malley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라는 두 합리성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범위로 확장된 형벌 제재의 양극적 패턴을 설명한다. 한 축에서는 옹보, 엄격한 훈육, 사형, 그리고 체인 갱 등 이미 포기했었던 형벌 제재와 지향이 신보수주의를 통해 복귀했다. 이는 국가 부권주의 통치 하에 통합된 도덕적 질서와 처벌 및 훈육을 한 데 묶는다. 다른 축에서는 자기통치, 기업가적, 주체적 수용자 등 급진적, 혁신적 형벌 동향들이 포착되는데, 이들은 대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뉴라이트라는 하나의 형벌성 내에서 다양한 형벌 제재들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O'Malley는 양극단의 중간 지대에는 여전히 기존의 복지, 훈육, 규율에 바탕을 둔 제재들이 특히, 구금을 중심으로 큰 변화 없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랫동안 신보수주의는 범죄와 싸우기 위해 사회의 ‘재도덕화’를 강조했고, 그 수단으로 국가와 법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Marsland, 1991). 심지어, Van den Hagg(1995)는 사형제도, ‘tough on crime’과 같은 강력 대응은 정의 실현보다 오히려 국가 권위를 회복시키는 목적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O'Malley, 1999 재인용).

반대편의 신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의 많은 영역에서 형사사법을 통한 국가 개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법의 역할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

하는 매우 제한된 형태로 이해된다. 더불어, 시민들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도 국가 권력이 탈중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O'Malley는 이념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라는 양극단의 압력이 실천적 수준에서는 그리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 모두 구금의 확대를 지지하지만, 이들의 정당화 담론은 분명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비용효율성을 이유로, 그리고 신보수주의는 사회의 '악'을 벌한다는 이유로 구금을 지지한다(예 - Zedlewski, 1985; Wilson, 1975).

2. Pratt의 “문명화와 형벌”, 그리고 “형벌 포퓰리즘”

(1) 형벌의 문명화 과정 이론

Pratt의 작업은 Foucault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그는 Foucault가 범죄학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인정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일부 계승했지만, 아래의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먼저, 교도소의 등장 시기, 지리, 건축 및 내부 구조 등 근대 형벌 전개에 관한 Foucault의 주장이 역사적 증거에 의해 정확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익숙한 비판이 있다(Pratt 2000a, 2000b, 2002; Ignatieff, 1978; Spierenburg, 1984). 더 중요한 비판은, Garland(1990)와 마찬가지로, Pratt(2000a) 역시 권력의 합리성만으로는 형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대 형벌성은 단순히 권력이라는 차원에서만, 혹은 특정 권력의 속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예, 주권(sov^{er}ign/principal), 훈육(discipline), 아니면 규율(regulation)/통치성(governmentality)).¹⁸⁾ 물론, 권력은 형벌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대 형벌성을 권력과 합리성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측면들, 특히 그 엄벌적/감정적/표출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의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Pratt의 주장이다.

18) Foucault 이론에서 권력 속성의 역사적 분절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Foucault 자신 역시 그것은 스펙트럼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즉, 동일 시대에도 서로 다른 권력의 속성이 여러 조건 하에 서로 다른 정도로 배합,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성 역시 특정 권력의 속성 혹은 권력이라는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 - 대표적으로, O'Malley(1992) 참고.

위 비판은 대표적으로 Feeley와 Simon(1992)의 “New Penology” 이론 및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적용된다. 소위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객관성’, ‘예측’ 등의 언어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강조된 합리적, 계산적 측면만으로 현대의 범죄통제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형벌성을 구성하는 감정, 문화, 상징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Pratt, 2000a; Sparks, 2001; Garland, 2003). 전술한 O'Malley(1992, 1999) 역시 현대 형벌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이를 정치-경제의 문제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Pratt이 보기에 현대 형벌 전개에서 도드라지는 엄벌성은 권력과 합리성의 문제보다 오히려 1970년대 이후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 사람들의 직/간접적 경험, 감정, 감수성, 문화와 더 관련이 크다는 것이다. 즉, 이 시대의 엄벌성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그리고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제도화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먼저 형벌/범죄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형성, 변화해 오고 있는가를 Norbert Elias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이라는 긴 연구를 통해 영국을 중심으로 근현대 형벌 전개의 궤적을 역사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늦어도 19세기 전반부터 1970년대쯤까지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형벌에 대한 감수성은 ‘문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 대규모의 재난/재해, 급격한 사회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회의 지역적 조건, 우연성 등과 결합하여, 특정 분야(예, 형벌)에서 ‘탈문명화’ 과정이 진행된다. 즉, 관료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근대 형벌성의 지속은 문명화 과정인 반면, 감정의 표출에 기반을 둔 엄벌성은 탈문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 주장은 교정 연감(Annual Prison Report), 교정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Prison Commissioners) 등 공식 정부 문서, 학술 기록, 회고록 및 당시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는 사진, 문학 작품 등 형벌에 관한 다양한 역사 자료의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형벌의 문명화를 보여주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혹한 신체형의 축소를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까지는 혼했던, 돌 따위의 무거운 물체로 신체를 누르는 고문은 1735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됐고, 1772년 법적으로도 폐지된다. 또한, 범죄자의 살갗에 낙인을 찍던 고통스런 형벌은 1779년 폐지, 반역죄를 지은 혹은

모함을 받은 여성을 매달아 불태웠던 형벌은 1790년 폐지된다. 19세기에도 신체 형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그 극단적 형태였던 공개 처형은 1868년 완전히 폐기된다.

또한, 소위 '감옥 개량' 역시 위와 맥을 같이 한다. Foucault의 작업에서 사용된 벤당의 파놉티콘에 가려져,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권력의 관점 및 부분적인 수정주의 사관에 가려져, John Howard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감옥 상태 개선 운동은 형벌성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Howard (1777)의 수용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 채광과 통풍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해 교도소는 다른 건물들로 둘러싸이면 안 되고, 따라서 도시 중심에 위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운동은 형벌성, 형벌의 문명화를 이해하는 한 지점이 된다.

교도소의 지리적 위치와 건축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 위생, 식사, 피복 등 교도소 삶의 필수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반적 구금 조건도 계속 향상됐다. 대표적으로, 수용자 식단의 변화를 볼 수 있다(Pratt, 1998).

- 1878년: 수용자 식사는 기본적인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정도 이상은 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교정위원회 보고서, 1878).
- 1899년: 수용자 식단은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온전한 음식이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양과 질을 갖춰야 한다(교정위원회 보고서, 1899).
- 1900년: 수용자 식단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육체노동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교정위원회 보고서, 1900).

식단과 같은 수용자 처우, 행형 실천 등 교도소 내부 레짐의 변화는 범죄자/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조응한다. 아래와 같은 정부, 학계, 복지 기구의 문서들을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읽어낼 수 있다.

- 1921년: 영국 교정청장 Evelyn Ruggles-Brise경 "... 모든 범죄자는 잠재적으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1921: 87)".
- 1952년: 영국 교정위원장 Lionel Fox경 "우리는 범죄와 도덕적 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형법과 윤리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범죄 예방은 형벌 제도를 넘어 다른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함께 이뤄져야 한다... (1952: 5)".

- 1956년: "범죄자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찌면, 우리 사회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Glover, 1956: 267)".

동 시기, 형벌 제재들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변화 역시 형벌의 '문명화' 과정에 부합한다. 먼저, 19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학자 중 하나인 Enrico Ferri를 중심으로 주장됐던 전기 충격은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다. 또한, 뇌, 생식기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수술함으로써 범죄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전반 일시적으로 수용되는 듯했으나 이내 격렬한 반대로 폐기되었다. 즉, 이러한 형벌 제재들은 당시의 "문화적 역치(Pratt, 2000a)"를 넘지 못했고, 이는 Elias의 관점에서 '당황' 및 타인의 '고통'을 둘러싼 사회적 감수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arland, 1990).

이처럼, 늦어도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는 전반적으로 문명화 과정을 겪었고 형벌도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물론, 이 시기에도 근대적 형벌성에 탈문명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863년 영국에서는 '교도소 상태는 정직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보다 열악해야 한다'는 '열등 처우 원칙(less eligibility)'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됐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형벌 전개와는 다른 방향의, 예외적, 일시적 현상이었고,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 변동과 그 파장인 도시 인구 팽창, 잉여 노동자,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이 Elias 관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예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미국 남부의 형벌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당시 다른 사회에서는 사라진 전근대적 형벌이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Georgia 주에서는 족쇄를 채운 수형자들에게 - 이하 "체인 갱" -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는 노동 형벌(Georgia 교정청 연간보고서, 1898), 채찍 따위로 수형자들에게 매질을 가하는 체벌 담당 직원의 구체적 역할을 규정한 기록(Georgia 교정청 연간보고서, 1899) 및 체인 갱들의 거리 행진과 같은 공개적, 광장식 처벌이 1925년까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당시 시민들의 자경단 활동 및 범죄자들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는 행위 등의 사적 처벌, 즉, 폭력에 대한 국가 독점의 부재는 미국 남부 형벌성의 특수한 일부를 구성했었다. 말하자면, 이 지역은 국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권력의 중앙화, 관료화가 덜 이뤄졌고, 따라서, 근대적 형벌 통제 장치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식적, 제도적 관점 외에도, 사회 전반의 상호의존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며 유연하지 못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깊은 흑과 백의 인종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흑인 노예’로 대변되는 범죄성(criminality)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수형자들의 신체에 쇠사슬을 채워 거리를 행진시키고 노동까지 부과했던 당시의 비인도적, 광장식, 가혹한 처벌이 문화적으로 용인됐다. 아래 Georgia 교정청장의 인식이 흥미롭다.

“우리가 흑인들을 이상적 시민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근면, 복종, 그리고 일정 정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평균적인 Negro¹⁹⁾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Georgia 교정청 연간보고서, 1913: Pratt, 2000a, 재인용).”

요약하자면, 20세기 초중반까지 형벌은 문명화 과정을 겪었고, 탈문명화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이는 Elias의 관점에서 무리 없이 설명된다. 즉, 문명화 과정은 특정 목적을 가진, 단선적, 통일적 전개가 아니라는 점, 장기적 역사의 흐름에서 문명화와 탈문명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탈문명화는 지역적 조건,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으로 근대 형벌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형벌 포퓰리즘 이론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형벌 전개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탈문명화의 예외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했던 가혹한, 감정적 처벌이 점점 그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고, 그 작동 메커니즘 역시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 이 현상은 거시 역사-사회적 관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따라서 중범위 수준의 설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예, Simon(1997). 이러한 맥락에서, Pratt은 현대 영어권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엄벌성을 “형벌 포퓰리즘(2007)” 이론

19) 과거 흑인을 극히 비하했던 단어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N-word로 표현될 만큼, 발성 자체가 법적/문화적으로 금지된 단어다.

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Pratt이 엄벌성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만, 형벌 포퓰리즘 이론이 그의 독창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스승인 Sir Anthony Bottoms가 조심스레 지적한 “Populist punitiveness(1995)” 개념부터, Cohen(1972)과 Hall(1979) 등 70년대의 모럴 패닉 이론들, 60년대의 대표적 비판범죄학자 Becker의 “Moral entrepreneurs(1963)”, 더 멀리 GH Mead(1918)의 연구까지 상호주의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범죄/형벌의 정치화, 민주주의의 문제, 정치/산업/종교 집단의 입법에 대한 압력, 미디어의 역할, 범죄 문제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 대중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일찍이 유사한 관점에서 엄벌적 처벌의 ‘구성’ 및 입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던 학자들이 있었다.

선대의 이론적 기반과 더불어, 동시대에 형벌 포퓰리즘에 대해 논의했던 학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Roberts et al. (2003)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형벌 포퓰리즘과 “Populist punitiveness(Bottoms, 1995)”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 그리고 형벌 포퓰리즘을 개인 정치인의 기회주의의 문제로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Roberts는 형벌 포퓰리즘은 단순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치인이 강력한 입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2003: 64). 이러한 비판들을 포함한 이론적 빈약함이 극복될 필요성이 제기됐고, 런던정경대 만하임연구소의 Tim Newburn이 이끈 범죄학 이론 프로젝트를 통해, Pratt이 형벌 포퓰리즘을 다시 설명하게 된다.

Pratt(2007)에 따르면, 형벌 포퓰리즘은 사회 전반에 강한 처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기제다. 이는 대표적으로 미디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각종 비-전문가 집단, 정치인들 등의 액터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된다. Roberts et al. (2003)과는 달리, Pratt은 강력한 형벌 정책과 실천뿐만 아니라 후기근대라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 변동 속에서 형성된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엄벌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시한다. 특히, 그는 형벌 포퓰리즘은 단순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개인 정치인의 선택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된 현시대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형벌 권력의 재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후기근대 사회의 “존재론적 안전(Giddens, 1991)”의 붕괴, 기존 정치 체도와 절차,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범죄율 상승이라는 ‘사회적’ 사실, 민영화와 경쟁으로 점철되는 미디어 섹터의 구조 변동, 지나치게 자극적인 범죄 보도, 범죄에 대한 대중 일반의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관료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형벌성

이 ‘민주적’ 참여라는 이름의 감정적이며 표출적인 형벌성으로 그 축이 이동하는 점, 즉 형벌 권력의 재편과 그 작동 방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⁰⁾ 또한, 형벌 포퓰리즘 현상은 엄벌성이 제도화되는 정치적 과정 및 그 과정을 주도하는 액터들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를 제외한다면, 단순히 모럴 패닉(moral panic) 이론 틀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벌 포퓰리즘 현상은 모럴 패닉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는 두 개의 틀과 각기 다른 접합점을 갖고 있다(Ungar, 2001; Pratt, 2007; Garland, 2008).

먼저, 형벌 포퓰리즘이 모럴 패닉과 닿아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모럴 패닉 이론이 확정적 측면이 강하다면, 위험 사회 이론은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모럴 패닉 이론에서는 패닉의 대상이 ‘주어지고’, 따라서 분명히 가시적인 반면(예, 후디를 뒤집어 쓴 방황하는 10대들) 위험 사회에서 위험의 대상과 책임의 주체는 ‘구성’되고, 종종 비가시적이다(Ungar, 2001).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서 사회적 분노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명백히 범죄자이고(예, 아동성범죄자) 따라서, 그 대상의 확실성과 가시성이라는 특징을 모럴 패닉 이론과 공유한다.

반대로, 형벌 포퓰리즘과 위험 사회의 접점은 다음과 같다. 모럴 패닉 이론에서는 형사사법제도와 같은 국가 기구, 제도, 장치는 위기를 ‘구성’, 사회 일반에 ‘인식’시키고, 또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고 믿으며,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합법성을 갖는다. 예컨대, 일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사회 통제를 위한 힘으로 작동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경계 및 결속을 강화한다. 반면, 위험 사회에서 국가 기구는 위기가 발생하도록 상황을 방치한다고 인식되며 도덕적 공분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Ungar, 2001). 형벌 포퓰리즘에서 형사사법제도 등의 국가 기구는 위기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사회 일반의 비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무능한’ 경찰, 시험공부만 잘한 ‘명청한’ 판사 등 범죄자를 제대로 체포, 수사하지 못한 책임, 가벼운 양형으로 ‘괴물’들을 길거리에 활보하게 한 책임 그리고 대중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죄’를 지은 존재로 인식된다. 즉, 이들은 사회 통제나 결속이 아닌, 사회적 균열을 초래한다고 인식되고, 따라서, 이 지점에서 형벌 포퓰리즘은 위험 사회와 만난다.²¹⁾

20) 형벌 포퓰리즘의 개념에 집중한 국내 논문으로는 이현영(2023)을 참고할 수 있다.

21) 이외에도, 문제해결과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모럴 패닉은 권위주의 포퓰리즘과 닿아 있고, 형벌 포퓰리즘은 위험 사회와 유사하다. 이 문제는 민주성 및 과학/기술과 그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V. 결론

지금까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포착된 주요한 형벌 전개의 특징을 기술, 설명했다. 요컨대, 기존 근대 형벌성이 지속되면서도, 이와 다른 성질의 형벌 동향들이 등장, 공존한다는 점을 엄벌성을 중심으로 그 대표 이론가들의 작업을 소개했다.

먼저, O'Malley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정치-경제 이념으로 후기근대 형벌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단순성, 축소성을 비판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보수주의 이념,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접합점, 그리고 이들 연합에 의해 모순적 성격의 형벌 동향들이 공존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그 독창성과 설명력을 인정받는다. Pratt의 경우 Foucault의 권력 관점을 취한 연구들이 형벌을 권력의 합리성으로만 이해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후기근대 형벌성 구성의 문화적, 감정적 측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Elias의 관점을 더해 범죄, 범죄자, 형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변화, 그리고 감정적 형벌의 부정적 측면만이 아닌 긍정적 측면 역시 함께 담아낸다는 점에서 후기근대 형벌성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두 이론 모두 푸코의 ‘그늘’을 벗어나 후기근대 형벌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이를 간결히,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장점에도, 거시 이론이 가진 전형적인 문제, 즉, 구체성 및 차이의 결여라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이들 외에도 Simon의 “Governing Through Crime(2007)”, Wacquant의 “Neoliberal Penalty(2009)” 등의 거시 형벌사회학 연구들의 단점에 대한 반성에서, 그리고 이들이 제공한 지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연구 동향이 이어졌다. 즉, 범죄성과 형벌성에 관한 보다 세분화된, 구체적인, ‘작은’ 범위의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했다(Garland, 2018).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된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보면, 근대 한국의 형벌 전개를 “엄벌주의”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그 “엄벌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그 기제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예, 추지현(2017)). 아울러, 엄벌성의 대표적 두 지표인 구금률과 교도소 상태로 보면, 한국은 엄벌적이지 않거나 혹은 엄벌성을 논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런 현실에서 “엄벌주의”가 지속적으로 말하여진다는 사실에는 성찰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의 일부로 설명 가능한 엄벌적 입법은 분명히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입법들만으로 근대 한국 형사정책의 전반적 동향이 엄벌성으로 대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에서 Pratt(2000b)이 지적한 회복적 사

법과 같은 포용적 성격의 정책, 프로그램 등이 엄벌성과 공존한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면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그 처벌에 있어 엄벌성이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범죄성/형벌성은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Braithwaite(2003)의 비판은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도 함의를 준다.

한국의 형벌, 교정에는 ‘엄벌적’이지 않은 다양한 정책, 실천이 공존할 수 있고, 특정 유형의 범죄는 더욱 엄벌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혹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과 달리, 현재 한국의 형벌 전개를 입체적으로 설명한 연구가 드문 만큼, 우리에게는 거시 이론으로 이를 조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들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중범위와 미시 수준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돼야 한다.

주지하듯, 연구 범위는 인식의 수준, 방법론, 방법, 연구 주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엄벌성”의 지표로 사용하는 구금률과 교도소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표들 역시 추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형사 사법제도, 액터들의 활동에 관한 다양한 지표 및 그들의 인식 역시 활용될 수 있다(Nelken, 2010). 또한, 교정 현장에서도 성인 남성교도소뿐만 아니라, 여성 시설, 소년 시설, 특수 목적 시설, 보안 수준 등에 따라 시설 간 교도소 상태 및 레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중 담론은 미디어 분석을 통해 이미 간접적으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분석, 서베이, 인터뷰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직접적인 분석 역시 사회의 엄벌적 수준, 더 나아가 형벌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참고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경험적으로 분석되지 않거나, 혹은 특정 관점에서 특정 측면만 분석된 채, 해외 이론의 이름을 빌린다면 그 유용성에 큰 제약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 형벌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해외의 이론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가를 두텁게, 성찰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유용성은 증가할 것이다. Sparks(2001)가 말했던 “상호문화적 이해(inter-cultural translation)” 또는 “맥락적 감수성(contextual sensitivity)”은 비단 여러 국가의 법, 제도, 실천 등의 단순 비교에 대한 경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만들어진 개념과 이론에 대한 충실한 이해 없이 이를 자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귀한 조언이라 하겠다. 한국의 ‘엄벌주의’는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이현영, (2023), ‘형벌포퐁리즘의 개념에 관한 논의’, 교정담론 제17권 2호, pp.151-179.
추지현, (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30권 3호, pp.45-84.
_____, (2017),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한인섭, (2006), 형벌과 사회통제: 근대감옥의 성립과 변모, 그리고 현대교정. 서울: 박영사.

■ 외국문헌

- Becker, H.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The Free Press.
Bottoms, A. (1995). ‘The Politics and Philosophy of Sentencing’, C. Clarkson & R. Morgan (eds.), The Politics of Sentencing, pp.17-50, Oxford: Clarendon Press.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3). ‘Shame and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1), pp.1-18.
_____. (2003). ‘What’s Wrong With The Sociology of Punishment?’, Theoretical Criminology, 7(1), pp.5-28.
Brilliant, J. (1989). ‘The Modern Day Scarlet Letter: A Critical Analysis’, Duke Law Journal 5, pp.1357-1385.
Brown, D. (1990). ‘Crime and Punishment in the Corporation: Putting the Value Back in Punishment’, Legal Service Bulletin, 15(3), pp.239-243.
Carr, G., & Ecker, J. (1996). Recommendations from the Task Force on Strict Discipline for Young Offenders, Toronto: Ontario Minister of Correctional Services.
Christi, N. (1977). ‘Conflicts As Proper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7(1), pp.1-15.
Cohen, S. (1972).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Rockers, London: MacGibbon and Kee.
_____. (1985). Visions of Social Control, London: Polity Press.
Crist, C. (1996). ‘Chain Gangs Are Right for Florida’, Corrections Today, 58(2), pp.178.
Feeley, M., & Simon, J. (1992). ‘The New Penology’, Criminology, 30, pp.449-470
_____. (1994). ‘Actuarial Justice: Power/Knowledge in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David Nelken (ed.), The Future(s) of Criminology, pp.173-201, London: Sage.
Foucault, M. (1978). Discipline and Punish, London: Allen Lane.
Gamble, A. (198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Right’, Ruth Levitas (ed.), The Ideology of the New Right, pp.86-109, Oxford: Basil Blackwell.
_____. (1988).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London: Macmillan.
Garland, D. (1985). Punishment and Welfare, Aldershot: Gower.
_____. (1990). Punishment and Modern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5). Penal Modernism and Postmodernism, unpublished paper.
_____.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 pp.445-471.
_____. (1997). ‘Governmentality and The Problem of Crime’, Theoretical Criminology, 1(2), pp.173-215.

_____ (2001). The Culture of Contr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8). 'On the Concept of Moral Panic', Crime Media Culture, 4(1), pp.9-30.

_____ (2018). 'Theoretical Advances and Problems in The Sociology of Punishment', Punishment & Society, 20(1), pp.8-33.

Garvey, S. (1998). 'Can Shaming Punishments Educat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5(3), pp.733-94.

Giddens, A. (1976).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A Positive Critique of Interpretative Sociologies, London: Hutchinson.

_____ (1994). 'Living in a Post-Traditional Society', U. Beck, A. Giddens, & S. Lash (Ed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p. 56-109, Cambridge, England: Polity.

Griling et al., (1998). 'A Telling Tale: A Case of Vigilantism and Its Aftermath in an English Tow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3), pp.474-90.

Glover, E. (1956). Probation and Re-educ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Hall, S. (1979). Revolt Against Chival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yek, F. (1988). The Fatal Conceit, London: Routledge.

Hayes, M. (1994). The New Right in Britain, London: Pluto Press.

Howard, J. (1777/1929). The State of the Prisons, London: J.M. Dent and Sons Ltd.

Ignatieff, M. (1978). A Just Measure of Pain, London: Penguin Books.

Karp, D. (1998). 'The Judicial and Judicious Use of Shame Penalties', Crime and Delinquency, 44(2), pp.277-94.

Lee, HY (2020). 'A Punitive but Non-Punitive Society: An Explanation of the Specificity of Penal Populism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evitas, R. (1986). 'Competition and Compliance. The Utopia of the New Right', Ruth Levitas (ed.), The Ideology of the New Right, pp. 110-131. Oxford: Basil Blackwell.

Marsland, D. (1991). Understanding Youth,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Massaro, T. (1997). 'The Meanings of Shame', Psychology, Law and Public Policy, 3(4), pp.645-92.

Mead, GH. (1918). 'The Psychology of Punitive Just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3, pp.577-602.

Miers, D. (1990). Compensation for Criminal Injuries, London: Butterworth.

Morris, N. (1993). 'Comments to Franklin E. Zimring. Drug Treatment as a Criminal Sanction', Colorado Law Review, 64, pp.831-835.

O'Malley, P. (1992). 'Risk, Power and Crime Prevention', Economy and Society, 21(3), pp.252-275.

_____ (1999). 'Volatile and Contradictory Punishment', Theoretical Criminology, 3(2), pp.175-196.

O'Malley, P., & Palmer, D. (1996). 'Post-Social Criminologies. Some Implications of Current Political Trends for Criminological Theory and Practice', Current Issues in Crininal Justice, 8(1), pp.26-39.

Pratt, J. (1996).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and Dangerousness: Reflections on Recent Trends Toward the Punishment of Persistence, unpublished paper.

_____ (1998). 'Towards the "Decivilizing" of Punishment?', Social and Legal Studies, 7, pp.487-515.

_____ (2000a). 'Civilization and Punishment',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3, pp.183-201.

_____ (2000b). 'Emotive and Ostentatious Punishment: Its Decline and Resurgence in Modern Society', Punishment & Society, 2, pp.417-439.

_____ (2000c). 'The Return of the Wheelbarrow Men: Or, the Arrival of Postmodern Penal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pp.127-145.

_____ (2002). Punish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_____ (2007). Penal Populism, London: Routledge.

Pratt et al., (2005). New Punitiveness, London: Routledge.

Radznowics, L. (1991). 'Penal regression', Cambridge Law Journal, 50(3), pp.422-44.

Roberts et al., (2003). Penal Populism and Public Opi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othman, D. (1978). 'Doing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19, pp.130-139.

Scruton, R. (1984). The Meaning of Conservatism, London: Macmillan.

Simon, J. (1995). 'They Died with Their Boots on: The Boot Camp and the Limits of Modern Penalty', Social Justice, 22, pp.25-48

_____ (1997). Megan's Law: Governing through Crime in a Democratic Society, unpublished paper.

_____ (2007). Governing Through Cr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parks, R. (2001). 'Degrees of Estrangement: The Cultural Theory of Risk and Comparative Penology', Theoretical Criminology, 5(2), pp.159-176.

Spierenberg, P. (1984). The Spectacle of Suffer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gar, S. (2001). 'Moral Panic Versus the Risk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Sites of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2), pp.271-291.

Van den Haag, Ernest. (1995). Punishing Criminals, New York: Basic Books.

Van Ness, D. (1996). 'Restorative Justic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B. Galaway and J. Hudson (eds.), Restorative Justi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17-35.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Wacquant, L. (2009). Punishing the Poo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Wilson, J. (1975). Thinking About Crime, New York: Vintage Books.

Zedlewski, E. (1985). 'When Have We Punished En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5), pp.771-779.

■기타자료

Annual Report of the Prison Commission of Georgia 1898 (1898). Atlanta: Dept of Corrections.

Annual Report of the Prison Commission of Georgia 1899 (1899). Atlanta: Dept of Corr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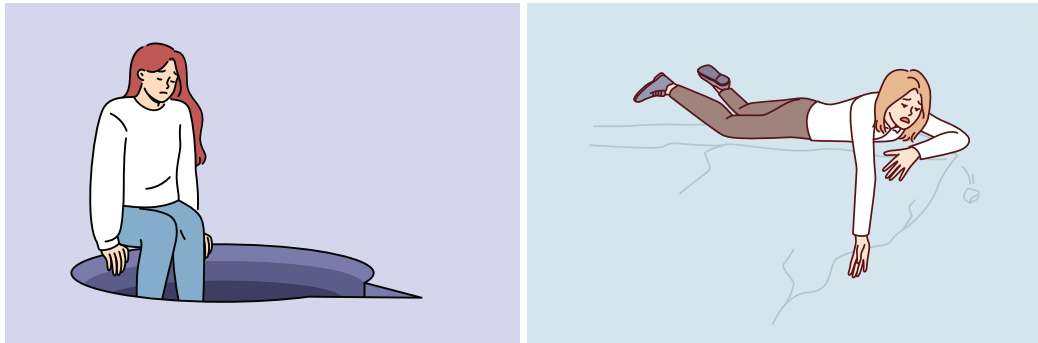
Report of the Committee Appointed to Consider and Report upon Dietaries of Local Prisons, (1878). London: Parliamentary Papers (95) XLIII, 53.

Report of the Prison Commissioners (1899). London: Parliamentary Papers (1900) XL I.

Report of the Prison Commissioners (1900-1). London: Parliamentary Papers (1902) cd,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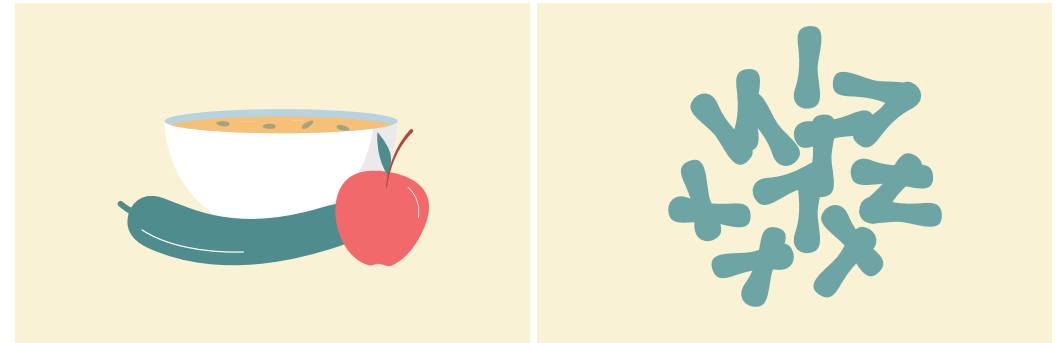
Report on the Work of the Prison Department, (1963). London: Parliamentary Papers (1964-5) cmnd, 2708.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안)」 보고



- 추진 배경** 수용자의 심리적 위기 요인을 고려한 심리상담의 실효성 제고 및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상담직원의 자격증 취득지원 확대,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등 심리상담의 전문성 제고
 - 수용자의 생명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강화

식중독 및 식품사고 발생 우려 식품 사용 자제 지시



- 추진 목적** 최근 복통 및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식품사고 우려, 식품 사용 자제, 식중독 예방 철저 지시
- 주요 내용**
-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저당 아이스크림 등 대체당 함유 식품 지양
 - 식중독 및 식품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은 가급적 배제
 - 배식시간에 맞춰 음식을 조리완료하고 2시간 이내 배식

을지연습 전시 현안 토의



- 목 적** 전시 총무계획 시행상 발전시킬 필요과제 선정 및 토의
- 일시·장소** 8. 18.(월) 14:00, 종합상황실(B121호)
- 방 문 자** 내부 : 장관, 비상안전기획관, 교정 보안정책단장 및 각과장 등
외부 : 육군 5군단 사령부 작전처장
- 발 표 자** 의정부교도소장
- 주요 내용** 드론 등의 공격에 대한 교정시설 방호대책 등

수용자 심리상담 멘토 임명장 수여식 및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8. 29.(금) 10:00, 법무연수원(진천본원)
- 참 석 자** 교정본부 : 심리치료과장 등 4명
소속기관 : 서울(구) 교감 김정환 등 18명
- 주요 내용**
- 멘토링 프로그램(수용자 심리상담) 참여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 상담 사례회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논의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기록물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8월 2일 기록물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과에서 보유한 비밀·보안지재와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부득이 파기해야 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제66대 김도형 소장 취임

서울구치소 제66대 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 소장이 지난 8월 취임했다. 김 소장은 법무부 의료과장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거쳐 2022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교정 경험을 쌓았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교정협의회로부터 ‘얼음생수’ 기증받아

안양교도소는 지난 8월 1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무더위 극복을 위한 ‘여름나기 얼음생수’ 5만 6,000병을 기증받고, 이를 기념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성사된 이번 기부는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구치소 | 교위 이승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진행

수원구치소는 지난 8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를 다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다양한 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등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8월 12일 보안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한성 교수가 강사로 초빙됐다.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의 주요 증상 이해, 위기 상황 대응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인천구치소 | 교사 장경준
폭발물 및 인질테러 대응 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지난 8월 20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폭발물 및 인질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미추홀소방서, 육군 507여단 2대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승진 임용식서 모범적 공직 생활 강조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8월 1일 승진 임용식을 개최, 승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박경선 소장은 “이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전 직원 대상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하절기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이웃과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며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보라미봉사단, 가평 수해 현장 봉사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8월 5일 수용자, 교도관, 의무교도대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파견,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보라미 봉사단은 이날 우렁이 농장의 비닐하우스 내 토사 제거, 양식장 정비, 농자재 수거,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에 힘을 보탰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기쁨과 희망은행 협업 취창업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5명의 양식조리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기쁨과 희망은행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창업 기초 지식과 금융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과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전 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8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문승욱 교도의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으며, 직원들은 이를 통해 청렴한 교정행정 구현과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8월 월례회 및 시상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8월 5일 월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교정 현장에서 헌신과 노고를 발휘한 직원들에게 모범 직원 표창장이 수여됐다. 박기주 소장은 이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협력을 통한 교정 사명 실천을 당부했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기증 받아

원주교도소는 지난 8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대비 생수

를 기증받았다. 기증된 생수는 기상 상황과 일정에 맞춰 열린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이는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수용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소방 훈련 통해 화재대응력 강화

강릉교도소는 지난 8월 20일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위소방대는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옥내소화전 작동 요령을 익히며 초기 화재대응력을 높였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안전 반출·파기 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 8월 18일 비상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 반출·파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침투, 천재지변, 폭동, 화재, 테러 등의 비상사태를 가정하고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비밀문서 및 주요 자재에 대한 안전한 반출, 필요시 신속한 파기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이수영
수용자 위한 생수·빙과 기증식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8월 7일 원각사 설혜스님 등 교화위원 7명의 방문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수용자를 위한 생수·빙과 기부로 성사됐다. 이날 기증식을 통해 설혜스님은 “수용자들의 혹서기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손운근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 진행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8월 13일 정상필 소장 주관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약 40명의 직원이 참여,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킹 오브 킹스’ 특별 시사회 개최

소망교도소는 지난 8월 1일 최근 할리우드 최고 흥행작 ‘킹 오브 킹스’에 대한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다. 영화는 ‘낮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생애’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으며, 특별히 장성호 감독이 직접 참석해 수용자에게 뜻깊은 의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교정발전협의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8월 13일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동시에, 실무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업무 능력 향상과 협력적 조직 문화 형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대구교도소는 지난 8월 5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양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허지원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서도 갑질 예방, 건전한 가치관 함양, 양성평등 조직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지난 8월 2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구치소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최송락

비상대기숙소 관리등 환경개선 공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8월 30일 비상대기숙소 관리등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로써 고항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경북북부 4개 교정시설 직원들은 앞으로 가족과 지인을 초청,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하라케이크서 생수 기증 받아

창원교도소는 지난 8월 7일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로부터 생수 1만 병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보관 후 시원한 얼음냉수 형태로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무더운 여름철 폭염으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 진단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 8월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대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시설물 옥상과 주요 피난동선 점검, 기계실·변전실 등 주요 시설 확인, 소방차량 진입 경로 및 가능 여부 파악 등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종합 점검이 이루어졌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수용자 문신 제거 및 의약품 지원 받아

포항교도소는 지난 8월 1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로부터 수용자 2명에 대한 문신 제거 지원과 함께 의약품 및 생수를 전달받았다. 이번 지원 및 전달을 위해서는 이문형 위원장을 비롯한 포항범범 의약지원위원회 관계자들과 포항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모범수형자 대상 자율치우 시행

진주교도소는 지난 8월 18일부터 모범수형자 250명을 대상으로 자율치우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불침번, 전화사용, 학습실·시청각실 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수용자 대상 특식 전달받아

대구구치소는 지난 8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로부터 전 수용자 대상 특식 삼계탕을 전달받았다. 박재원 협의회장은 "이번 특식이 수용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계속되는 무더위를 견디는 수용자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8월 7일 교정협의회가 기증한 생수 5,000병을 전달받았다. 권영섭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에 대해 "폭염 중에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훈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소방 및 긴급대피 도상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8월 20일 소화기 사용 요령 등을 포함한 소방 및 긴급대피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무더위 속에서도 재난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동 조치와 확산 방지 방법을 익혔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옥

유희숙 목사 기증 아이스크림 나눠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8월 교정위원 유희숙 목사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아이스크림을 기증받았다. 이날 유목사는 "이 작은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유정 소장은 이에 대해 "기관 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현

직원 안전 위한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8월 25일 현대자동차 김천지점과 협력해 직원 대상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 성능 점검과 오일·소모품 교환, 계절별 관리 안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교정사고 예방 위한 대응 훈련 진행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8월 13일 수용자 도주 상황을 가정, 이에 대한 긴급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근무자의

신속한 보고, 기동순찰팀 출동, CCTV 활용 위치 파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매월 훈련을 통해 교정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울산구치소 | 교사 박준규

무더위 대비한 물품 기증받아

울산구치소는 지난 7월 28일 교정협의회 불교 분야 종교위원인 효암스님으로부터 생수 5,000병, 아이스크림 800개, 커피면 800개를 기증받았다. 효암스님은 이날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다가오는 혹서기를 잘 견뎌내고, 수용생활도 건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강태훈

관내 주요 기관장 참관 진행

경주교도소는 지난 8월 12일 지역사회 안전과 교정행정 협력 강화를 위해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기증받아

통영구치소는 지난 8월 12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하절기 수용자에게 지급될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에 대해 관장도 소장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기증 특식 접수

밀양구치소는 지난 8월 18일(월), (사)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부터 수용자 600인분 특식 기부품(크리스피도넛 1,200개)을 전달받았다. 해당 기관은 2024년부터 교정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물품이 더위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수용자 위한 닭고기 기부받아

상주교도소는 지난 8월 7일 (목)올봄으로부터 수용자에게 지급할 닭고기 600여 마리를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올봄의 정기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의 영양과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5종 기구 완비된 체력단련장 설치

거창구치소는 지난 8월 22일 연무관 내 직원 체력단련장을 설치했다. 신설된 체력단련장은 스미스 머신 등 5종의 기구를 갖추고 있다. 거창구치소는 이로써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업무 효율 향상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8월 6일 혈액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헌혈량 확보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하나같이 "헌혈은 수혈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 진행

대전교도소는 지난 8월 7일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 '우리들의 영웅에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유성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이 일일 카페를 운영, 더위에 지친 직원들에게 직접 만든 음료와 응원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찾아가는 영화관' 통해 <로비> 상영

청주교도소는 지난 8월 22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영화 <로비>를 상영, 수용자 416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영화 상영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마련됐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천안교도소는 지난 8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 교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례를 공유했으며,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정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직무 현장에서의 인권 관련 업무에 대해 다뤘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청사 및 소망의집 간판 교체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8월 청사와 소망의집의 간판을 새롭게 교체했다. 이번 간판 교체는 기존 청사 간판의 노후화로 들뜸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 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작업으로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자 처우 개선과 함께 시설 정비 수준을 동시에 높이게 됐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사랑나눔 아이스크림 기부 받아

공주교도소는 지난 8월 8일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으로부터 사랑나눔 아이스크림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급,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수용생활 유도를 통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구치소 | 교사 이재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 8월 13일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충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정신건강 인식 향상과 동료 간 관심과 지지 문

화의 확산, 조직 전체의 심리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수해 복구 현장 자원봉사 활동 전개

홍성교도소는 지난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수해 복구 현장 자원봉사를 전개했다. 이날 직원들은 주택 뒤편 유실 경사면의 잔해를 제거하고 고임목 설치했으며, 수방용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보강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양육유아 유튜브 촬영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7월 31일 법무부TV 양육유아 관련 유튜브 촬영을 진행했다. 양육유아 시설과 생활 모습,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인터뷰 등을 담은 이번 촬영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을 홍

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진정민

보라미 봉사단 수해 복구 작업 참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8월 1일에 수해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직원 및 수용자와 홍성교도소서산지소교정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택 내부의 토사를 치우고 예초작업 등 주변 환경 정리에 지역과 상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대비 태세 강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연습에서는 논산지소는 자체 통제반·상황실·실시부를 편성, 이를 통해 을지 3·21중 사태 발령과 다양한 사건 메시지 접수에 따른 조치를 수행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전은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수용정보 보호 및 PC 등 보안관리를 내용으로 한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제공, 인식 향상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헌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8월 12일 사회복귀과 교육실에서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시험은 감염병 유증상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시험실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외부 감독관을 배치해 진행한 이번 시험에는 총 13명이 응시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최찬원

유관기관 합동 실제 훈련 실시

전주교도소는 지난 8월 18일 소내 비상대기숙소에서 국가 중요시설 대상 테러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완산경찰서와 제9585부대 제2대대가 공동 참여한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의 일환으로, 직원이 인질로 잡힌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신규 9급 직원 임용식 진행

순천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교도소 강당에서 신규 9급 직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었다. 이번 임용식은 공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의 시작을 축하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훈련 진행

목포교도소는 지난 8월 20일 육군8332부대1대대, 일로화출소, 일로119안전센터와 함께 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은 드론 테러 발생 시 화재진화, 범인체포, 방호지원 등 유관기관 간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교도소 | 교사 문준호

원불교 군산 교구로부터 생수 기증 받아

군산교도소는 지난 8월 13일 원불교 군산 교구로부터 생수 1만 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생수는 옥서기를 맞은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된 것으로, 이를 위해 원불교 월명 교당 하정만 교무 등 10명이 교도소를 방문했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교정협의회서 특별식 기부 받아

제주교도소는 지난 8월 14일 교정협의회 천주교분과로부터 수용자들의 옥서기 건강과 원활한 교정생활 지원을 위한 닭다리 1,800개와 삼계탕용 부재료를 기부받았다. 교도관 회의를 통해 접수된 이번 기부품은 무더위로 지친 수용자들의 특별식으로 제공됐다.

장흥교도소 | 교도 한지현

교정협의회로부터 옥서기 물품 지원 받아

장흥교도소는 지난 8월 8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약 270만 원 상당의 옥서기 물품을 지원받았다. 이번 물품은 생수 500ml 4,000병, 아이스크림 640개, 삼계닭 640마리로, 이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복귀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2025년 을지연습 연계 훈련 실시

해남교도소는 지난 8월 20일 2025년 을지훈련과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사변 등 비상상태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기 상황에서 기관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광주지방교정청 주관 사례회의 개최

정읍교도소는 지난 8월 8일 2025년 하반기 광주지방교정청 주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용자 상담 방법과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으로 진행, 문제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체득하고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모범 공무원



수원구치소 | 교위 임채형

임채형 교위는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수용기록과 행정 업무를 담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과 관련해 행정복지센터와 신속히 연계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 복귀 준비와 가족생활 안정에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신부전증 등 중증질환을 가진 무연고자가 출소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해 수급권을 선지원했다. 출소 후에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위탁시설 연계에도 적극 나섰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미진

김미진 교위는 지난 6월 28일 여수용동에 독거수용 중인 수용자가 거실 TV 거치대에 브래지어 끈과 머리끈을 걸어 목을 매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보안과에 상황을 전파하고 묶여 있던 줄을 절단하여 자살 시도를 제지함으로써 자살 시도를 막는 데 기여했다. 이후 상담 과정 중에도 "죽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긴박한 상황은 계속됐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감 조도현

조도현 교감은 지난 7월 형 확정 업무를 처리하던 중, 수용자의 형집행지휘서에 기재된 미결구금일수가 '2024. 10. 24.부터 266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교정정보시스템 입출소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1심 구속기간 만료 후 재입소 사실이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실제 미결구금일수가 '2024. 4. 11.부터 462일'임을 밝혀냈다. 이에 즉시 대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정정지휘를 받아 수용자 불법구금 등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목포교도소 | 교위 강중우

강중우 교위는 보안과 미지정수용동을 담당해 근무하면서, 옥서기 문열질환에 취약한 환자와 노인 수용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했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수용자 개개인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관리로 수용질서 안정화에 이바지했으며,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안전한 교정환경 조성 및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4명의 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충주구치소 심리치료팀은 한 사람의 수용자를 여러 눈으로 살펴보고,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며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자살 위험 등 개인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전문가의 명칭은 무엇일까?

힌트



가족 갈등, 수용 생활 적응, 자살 위험 등을 고려하며, 자해 위험이 감지되면 현장을 빠르게 안정시킨다.

초성퀴즈 정답: 심리치료사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태풍 예보가 있으면 준비하세요



거주지역에 태풍이
영향을 주는 때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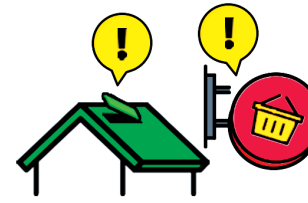
비상시 대피 방법 파악과
비상용품을 구비



외출은 자제하고
주변에 기상정보를 공유



집안팎 하수구, 배수로,
축대, 옹벽 등 점검



지붕, 간판 등이
날아가지 않게 고정



선박,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정비

태풍 특보 시에는 꼭 지켜주세요



내가 있는 곳의
태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해
위험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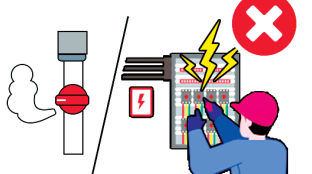
바·바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머물기
* 외출 자제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야외활동 금지
* 논둑이나 물꼬, 지붕 수리 등



가스를 미리 차단하고
전기시설 점검 금지